

세법연구 12-09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 사례 조사

2012.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학 수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태 훈 공인회계사

최 정 욱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	11
1. 개요	11
2. 중소기업의 현황	12
3. 중소기업의 범위	15
가. 중소기업기본법	15
나. 조세특례제한법	19
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비교	23
4.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25
가.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	25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35
다.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39
5. 중견기업의 현황과 세제혜택	43
가. 중견기업 현황	43
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43
III.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과세제도	45
1. 미국	45
가. 개요	45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47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52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53

2. 일본	55
가. 개요	55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58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64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66
3. 영국	67
가. 개요	67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68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74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77
4. 프랑스	78
가. 개요	78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80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87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88
5. 호주	89
가. 개요	89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90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94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95
IV. 국제비교	97
1. 기업규모 판정	97
2. 조세지원제도 비교	102
가.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102
나.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105
다.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107
라.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116

마. 조세회피 방지제도.....	118
바.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18
사. 조세지출 규모 간의 비교.....	118
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비교.....	120
V. 시사점.....	122
1. 개요.....	122
2. 주요국의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별과세제도의 운영.....	122
3. 법인세율 구조의 비교.....	123
4. 조세지출규모의 비교.....	124
참고문헌.....	125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12
〈표 II-2〉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13
〈표 II-3〉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14
〈표 II-4〉 규모기준	15
〈표 II-5〉 독립성기준	17
〈표 II-6〉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23
〈표 II-7〉 투자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25
〈표 II-8〉 연구·개발·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29
〈표 II-9〉 기타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30
〈표 II-10〉 기타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32
〈표 II-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34
〈표 II-1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35
〈표 II-13〉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36
〈표 II-14〉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37
〈표 II-15〉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37
〈표 II-16〉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39
〈표 II-17〉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41
〈표 III-1〉 미국 종업원 규모별 전체기업 구분.....	45
〈표 III-2〉 종업원 있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구분.....	46
〈표 III-3〉 최저한세 적용배제 법인	49
〈표 III-4〉 미국의 법인세율.....	53
〈표 III-5〉 2011년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54

〈표 III-6〉 산업별 규모별 기업 수.....	55
〈표 III-7〉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58
〈표 III-8〉 일본의 법인세율.....	60
〈표 III-9〉 2011년 영국 중소기업 현황.....	67
〈표 III-10〉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	68
〈표 III-11〉 VAT 단일세율표.....	72
〈표 III-12〉 영국의 법인세율	76
〈표 III-13〉 2012-13년 영국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78
〈표 III-14〉 2011년 프랑스 중소기업 현황.....	79
〈표 III-15〉 2012년 프랑스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89
〈표 III-16〉 2011년 기업 규모별 호주 기업 수.....	89
〈표 III-17〉 2011년 기업규모별 호주 기업의 종업원 비중.....	90
〈표 III-18〉 2011-12년 호주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96
〈표 IV-1〉 국가별 세법상 기업규모 판정기준 비교	100
〈표 IV-2〉 투자·구조조정 관련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03
〈표 IV-3〉 연구·개발·고용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06
〈표 IV-4〉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법인세율 현황.....	108
〈표 IV-5〉 세율 등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12
〈표 IV-6〉 납세협력부담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17
〈표 IV-7〉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18

I. 서론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간한 『2012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이고 전체 종업원 수 중 중소기업에 의해서 고용된 종업원의 비중은 86.8%에 달함
 -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999년 274만개에서 2010년 312만개로 증가였고 종업원 수는 1999년 828만명에서 1,226만명으로 증가함
 -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는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성장과 고용의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함
 -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는 대기업에 비해 재무적·경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됨
 - 중소기업의 약화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금융지원제도와 더불어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정확한 판정과 효율성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그리고 차별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의 수립이 중요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규모별 차별과세를 위한 기업규모 분류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의 기업규모별 차별

과세제도를 비교하였음

- 본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분류 기준과 기업 규모별 차별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의 기업규모분류 기준과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를 조사한 후, 제Ⅳ장에서 차별과세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의 제도를 비교·요약하고 제Ⅴ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II.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

1. 개요

- 우리나라는 기업규모에 따라 조세부담과 협력의무에서 차별적인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 중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구분함
 - 세법에서는 별도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구분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과세제도 적용을 위한 기업규모 분류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를 준용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규모 분류기준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동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됨

- 중소기업 분류기준에는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함
 - 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즉각적인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배제를 막기 위하여 일정기간(3년) 동안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조세부담, 납세협력의무부담 등의 규정에서 차이가 있음
 - 조세부담상 차이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비롯됨

- 납세협력의무부담상 차이는 중소기업의 업무의 간소화와 단순화로 인해 발생됨

2. 중소기업의 현황

-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274만개에서 2010년 312만개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종업원 수는 828만명에서 1,226만명으로 13.8% 증가하였음
-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종업원 수의 비중은 79.5%에서 8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동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기준한 것은 아님

〈표 II-1〉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

(단위: 개, 명, %)

연도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체 수	종업원 수
1999	2,758,627	10,425,398	2,739,783	8,283,269	99.3	79.5
2000	2,729,957	10,768,597	2,707,805	8,680,694	99.2	80.6
2001	2,658,860	10,876,418	2,649,691	9,176,237	99.7	84.4
2002	2,861,830	11,737,640	2,856,913	10,154,095	99.8	86.5
2003	2,939,661	11,870,358	2,934,897	10,308,574	99.8	86.8
2004	2,927,436	11,824,074	2,922,533	10,210,629	99.8	86.4
2005	2,867,749	11,902,400	2,863,583	10,449,182	99.9	87.8
2006	2,940,345	12,234,160	2,936,114	10,677,789	99.9	87.3
2007	2,976,646	12,612,692	2,974,185	11,149,134	99.9	88.4
2008	3,046,958	13,070,424	3,044,169	11,467,713	99.9	87.7
2009	3,069,400	13,398,497	3,066,484	11,751,022	99.9	87.7
2010	3,125,457	14,135,234	3,122,332	12,262,535	99.9	86.8

주: 연도별 자료의 대상 업종이 상이하며, 통계청의 조사기준변경으로 2007년도 수치는 이전 발표내용과 다르나, 이 경우 본 수치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통계청에서 권고함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2 중소기업현황』, 2012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표 II-2>에서와 같이 2012년 현재 312만개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사업체 수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99.9%를 차지하는데, 이중 소기업이 96%, 소상공인이 87.9%로 영세한 업체가 기업체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2>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기업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농업, 임업 및 어업	785	99.7	473	60.1	240	30.5	787	100.0
광업	1,758	99.9	1,737	98.7	1,389	79	1,759	100.0
제조업	324,485	99.8	315,570	97.1	263,194	81	325,082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373	95.9	249	64	203	52.2	389	10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821	99.5	3,099	63.9	1,907	39.4	4,846	100.0
건설업	96,372	99.6	93,127	96.3	72,916	75.4	96,716	100.0
도매 및 소매업	870,309	100	840,305	96.5	785,886	90.3	870,599	100.0
운수업	344,164	100	341,565	99.2	334,035	97	344,290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633,313	100	620,119	97.9	580,537	91.7	633,381	1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284	99.4	15,535	69.3	11,077	49.4	22,410	100.0
금융 및 보험업	9,805	98.7	7,131	71.8	5,965	60.1	9,933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583	99.7	103,106	96.4	97,859	91.5	106,935	100.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65,511	99.5	56,244	85.4	42,765	65	65,832	1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3,602	98.7	25,155	73.9	21,202	62.3	34,038	100.0
교육서비스업	142,357	99.9	132,980	93.3	118,953	83.5	142,456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2,235	100	71,068	86.4	47,355	57.6	82,256	1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8,530	100	97,147	98.5	94,519	95.9	98,579	100.0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85,045	100	277,723	97.4	268,806	94.3	285,169	100.0
산업전체	3,122,332	99.9	3,002,333	96.0	2,748,808	87.9	3,125,457	100.0

주: 1. 소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인 기업임.
 2. 소상공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종업원 수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2 중소기업현황』, 2012.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을 보면, <표 II-3>에서와 같이 2012년 현재 중소기업 종업원 1,226만명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이 차지하고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전체 종업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86.8%를 차지하는데, 이중 소기업이 57%, 소상공인이 3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3〉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명, %)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기업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농업, 임업 및 어업	9,949	95.4	2,202	21.1	588	5.6	10,425	100
광업	13,066	93.3	11,380	81.2	4,244	30.3	14,009	100
제조업	2,735,383	80.6	1,848,615	54.5	799,366	23.6	3,392,737	1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7,885	53.8	725	5	438	3	14,645	1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4,381	93.2	12,879	22.1	4,903	8.4	58,345	100
건설업	954,296	81.1	634,154	53.9	229,043	19.5	1,176,098	100
도매 및 소매업	2,468,058	95.7	1,778,600	69	1,432,932	55.6	2,577,813	100
운수업	843,961	90.7	556,456	59.8	395,394	42.5	930,743	100
숙박 및 음식점업	1,723,686	98.2	1,466,391	83.6	1,217,939	69.4	1,754,779	1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9,639	76.4	54,555	14.4	25,072	6.6	379,296	100
금융 및 보험업	107,365	55	18,437	9.4	10,700	5.5	195,347	1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1,218	86.1	186,602	63.9	152,614	52.3	291,832	10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451,401	71	183,828	28.9	98,408	15.5	635,580	1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76,054	62.4	69,115	9.1	43,274	5.7	762,573	100
교육서비스업	490,449	96.7	300,541	59.2	210,854	41.6	507,437	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52,533	98.6	302,356	53.9	152,401	27.2	560,559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32,233	91.9	182,400	72.2	165,916	65.6	252,760	100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600,978	96.9	447,200	72.1	389,475	62.8	620,256	100
산업전체	12,262,535	86.8	8,056,436	57.0	5,333,561	37.7	14,135,234	100

주: 1. 소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인 기업임.

2. 소상공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종업원 수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2 중소기업현황』, 2012.

3. 중소기업의 범위

가.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규정임

1)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과는 달리 특정한 업종을 지정하지 않음

2) 규모기준

□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표 II-4〉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주: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으로 비중소기업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기업을 열거하고 있음

〈표 II-6〉 독립성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p> <p>.....</p> <p>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p> <p>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p> <p>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p> <p>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p> <p>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p>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다른 국내기업의 지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인 경우 등을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다목 개정으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규모기준을 관계 기업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기준이 강화되었음

4) 졸업기준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와 같이 ① 규모기준과 ②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둠

5) 유예제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및 「중소기업기본법」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¹⁾
 - 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②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경우
 - ④ 중소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6) 소기업기준

- 중소기업은 다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함
 -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정의됨
 - 소기업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임²⁾
 -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② ①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7)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됨
 - i)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 ii)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닐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업종을 35개로 열거함
 - 적용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특정 수탁생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특정 물류산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기타: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정 직업기술 분야 학원, 특정 엔지니어링사업, 특정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2) 규모기준

-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준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함³⁾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종업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함

□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⁴⁾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함⁵⁾

-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매출액은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임

□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함⁶⁾

3)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실질적 독립성은 <표 II-5>에서 제시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면 확보되는 것으로 봄
- 이 경우 <표 II-5>에서 제시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소유는 제외)를 포함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

4) 졸업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업종별 구분에 따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⁷⁾
 - 일반적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업종별 구분에 따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5) 유예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유예기간’이라고 함
 - 유예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서 다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정한 상황: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6) 소기업기준

- 소기업이란 매출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 업종별 소기업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②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비교

-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은 대상 업종, 졸업 기준, 유예배제 사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
 - 그 차이는 아래 <표 II-6>에서 비교함

<표 II-6>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모든 업종 가능	제조업 등 35개 업종
규모기준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좌동 (조특령 제2조제1항제1호) (측정시점의 차이는 있음)
독립성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상시근로자수 등이 [별표 1]에 속하지 않거나 규모기준에 속하지 않는 관계기업 	좌동 (조특령 제2조제1항제2호)

〈표 II-6〉의 계속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졸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업종별로 [별표 1]에 의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업종별로 [별표 1]에 의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배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중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이 [별표 1]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모기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자산총액 5천억, 자기자본 1천억,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5천억 이상인 경우 ■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 위의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
비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있음	

4.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가.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

1) 투자·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제도는 투자세액공제와 특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임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 지원내용은 다음 <표 II-7>에서 제시함

<표 II-7> 투자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의 50%를 감면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중소기업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를 25% 경감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10%의 증여세를 부과함	상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이 영에 따라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준용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함

〈표 II-7〉의 계속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등(전환전사업)을 수도권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이 적용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 과세연도 동안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제휴상대물류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양도차익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 경감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중소기업이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의 50%를 감면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다만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포함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표 II-7〉의 계속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부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는 면제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주소 변경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됨	
취득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특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함 일반기업은 면제 안 됨
재산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함	일반기업은 면제 안 됨
가업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max(기업상속 재산가액×70%, 2억원)]를 받을 수 있음	상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이 영에 따라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준용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적용대상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⁸⁾

- 적용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임
 - 다만 적용대상 자산에는 중고품 및 특정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
- 조특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적용대상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적용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8)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⁹⁾

-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
- 특정설비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전자상거래설비임
- 손금산입의 세무처리는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을 준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세액의 50%를 감면함

2) 연구·개발·고용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제도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음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8>에서 기술됨

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표 II-8〉 연구·개발·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중소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 ¹⁰⁾ 까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그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감소액 × 50%를 소득공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고용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 상시근로자의 경우 100%)를 세액공제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기타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임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9〉와 같음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여야 하고, 보고서 발행시점에는 일몰 종료되었음

〈표 II-9〉 기타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¹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사업에 사용한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① 기증한 설비의 시가나 ② (양도한 자산의 시가 - 양도가액)을 손금에 산입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내국법인의 경우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연구, 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한 협력재단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¹²⁾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기증한 설비의 시가나 ② (양도한 자산의 시가 - 양도가액)을 손금에 산입함¹³⁾
- 적용시한: 2012년 12월 31일
 -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함
 - 기증받거나 저가로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중 기증하거나 저가양도하는 내국인과 특수관계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함
 - － 특수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를 말함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¹⁴⁾

11)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고, 보고서 발행시점에는 일몰 종료되었음

12)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의 설비: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조특법 제4조 2항의 사업용자산, 제10조 제1항~제3항의 시설 또는 자산,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설 또는 자산 그리고 제22조 제1항의 시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

14) 「조특법」 제8조의2

- 소멸시효: 2013년 12월 31일
-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출자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야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함

- 소멸시효: 2013년 12월 31일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협력을 말함
- 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말함
- 협력중소기업: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② ①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및 ③ 그 밖에 해당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임

4) 기타

- 중소기업의 기타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제도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업무무관경비 범위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음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10>에서 기술됨

〈표 II-10〉 기타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제85조의2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연도 과세소득(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무무관경비 범위 축소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하는 생산설비 등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금액을 세액공제 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창투자조합 등을 통해서 취득한 창업자, 중소기업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비과세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타인에게 매입한 것은 제외)한 금액의 10%(벤처기업의 경우 30%)를 투자 후 2년 중 한번 소득공제 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함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표 II -10〉의 계속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양도 시 익금불산입 하고 2년 후부터 2개 사업연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 할 수 있음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거주자)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공제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적용대상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중소기업이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 × 1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세액을 감면함
- 감면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¹⁵⁾

15) 감면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 감면비율은 다음 <표 II-11>과 같음

<표 II-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단위: %)

구분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5
수도권에서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15

○ 소기업이란 매출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임

-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②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금액을 세액공제함

○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란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등¹⁶⁾을 의미함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6) 환어음 등 지급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 ①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 ②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③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공제할 금액은 다음 <표 II-12>와 같음

<표 II-1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 A + B	
A	$\left\{ \begin{array}{l} \text{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 \\ \text{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 \\ \text{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 \\ \text{터 30일 이내인 금액}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을 지급하기} \\ \text{위하여 결제한 약속} \\ \text{어음의 금액}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0.5\%(\text{네트워크 론제} \\ \text{도를 이용하는 대기업} \\ \text{의 중소기업에 대한} \\ \text{구매대금은 0.4\%}) \end{array}$
B	$\left\{ \begin{array}{l} \text{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 \\ \text{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 \\ \text{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 \\ \text{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을 지급하기} \\ \text{위하여 결제한 약속} \\ \text{어음의 금액(A에서} \\ \text{빼고 남은 금액을 말} \\ \text{함)} \end{array} \right\} \times 0.15\%$

□ 그 밖에 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47조의 3),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의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 117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 등이 존재함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1) 조세부담 완화

가) 투자관련 지원

□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중소기업과 달리 적용하는 과세제도는 취득세중 과 제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

- ④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⑤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상업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13>에서 기술됨

<표 II-13>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경우 4%p의 중과세율을 적용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경우 3%를 세액공제 ■ 조세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내국인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본공제금액: 투자금액 × 4% ■ 중소기업의 추가공제금액: 투자금액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2% 혹은 3% ■ 일반기업의 추가공제율도 2% ■ 조세법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연구·개발·고용 지원

□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중소기업과 달리 적용하는 과세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임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14>에서 기술됨

〈표 II-14〉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연구 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은 30% ■ 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은 초과발생액 적용 가능시에는 초과 발생액의 50%와 당해연도 발생액기준의 25% 중 선택가능/초과발생액 적용 불가시는 당해연도 발생액기준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20% ■ 일반기업의 공제율은 초과발생액 적용가능시에는 초과발생액의 40%와 당해연도 발생액에 6%를 한도로 하여 3%+매출액에서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50% 중 선택가능/초과발생액 적용 불가시에는 후자만 적용함¹⁷⁾

다) 기타

-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중소기업과 달리 적용하는 과세제도는 대손인정 범위 확대, 접대비한도 증액, 양도소득세율 인하, 분납기한 연장, 건설용역 인도기준 적용,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소득제외 등임

○ 조세지원제도별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15〉에서 기술됨

〈표 II-15〉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법인세법 제55조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 신설	과세표준 금액 2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의 법인세율 적용
대손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중소기업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금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상 채권만 대손 인정 ■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7)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하기에 기술하기로 함

〈표 II-15〉의 계속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접대비 한도 증액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는 기초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이 적용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은 1,200만원 ■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양도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04조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율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보유한 1년 미만의 주식은 30%, 그 밖의 주식은 2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	법인세법 제64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은 1개월 ■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 른 중소기업
건설용역 인도기준 적용	법인세법시행 령 제69조	중소기업이 1년 미만의 건설용역 등 을 제공하는 경우 인도기준 적용가 능	일반기업은 진행기준 적용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소득세법시행 령 제12조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 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 보조비는 월 20만원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초법 제16조제1항, 제3 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가증권 평가액 인하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63조	최대주주의 주식평가 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를 가산함.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15%를 가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경우 20%를 가산하며 지분율이 50% 를 초과할 경우 30%를 가산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의 인하	조세특례제한 법 제132조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의 7%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경우 100억 이하 부분의 최저한세율 은 10%, 1,000억 이하 12%, 1,000억 초과 16% ■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 른 중소기업
가산세 한도 인하	국세기본법 제49조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 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법 및 조특 법 상 특정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위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을 한 도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1 억원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인상: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는 기초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이 적용됨
 -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임
 -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률
 - 적용률은 누적적으로 적용됨
 - 적용률은 1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0.1%, 500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0.03%임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함

2) 납세협력의무 완화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과세제도는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임
 -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의 근거법률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 II-16>에서 기술됨

<표 II-16>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구분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고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	법인세법 제113조	중소기업 간 합병 등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기업은 구분경리함

3) 기타

- 그 밖에 일몰규정으로 없어졌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칙에 의해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이 공제율에서 혜택이 있었음

다.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2010년 7.41%, 2011년 8.21%를 차지하고 있음

- 차별적 과세제도를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조세지원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공제율 등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으로 구분하면 2011년 전체 조세지출 대비 각각 5.09%와 3.12%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지원액은 2010년에 1.4조원, 2011년에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2010년 0.77조원에서 2011년 0.9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총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2010년 3.99%, 2011년 3.70%의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2010년과 2011년에 총조세지출액의 2.58%와 3.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밖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총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임
-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접대비 한도액, 누진적 법인세율,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인정 등과 같이 집계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¹⁸⁾

18) 이러한 사항은 이후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에서도 동일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의 경우 동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이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포함된 것임

〈표 II-17〉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단위: 억원, %)

구분	근거법률	조세지출				
		2010		2011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978	3.99	10,953	3.7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86	0.36	1,144	0.39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	890	0.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58	0.22	856	0.29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345	0.12	430	0.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40	0.05	287	0.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1	0.00	222	0.0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98	0.03	115	0.0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94	0.03	76	0.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8	0.01	27	0.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	0.00	21	0.01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6	0.01	19	0.0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2	0.00	10	0.00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2	0.00	4	0.00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3	0.00	3	0.0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1	0.00	2	0.0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0.3	0.00	1	0.00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3	0.00	1	0.0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8	0.00	-	-

구분	근거법률	조세지출				
		2010		2011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0.1	0.00	-	-	
	기타 ²⁾³⁾⁴⁾⁵⁾	-	-	-	-	
	소계	14,484	4.83	15,061	5.09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 ⁶⁾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7,730	2.58	9,193	3.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4	0.01	44	0.0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⁷⁾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	-	-
	기타 ⁸⁾		-	-	-	-
	소계		7,754	2.58	9,237	3.12
합계			22,238	7.41	24,298	8.21
총조세지출액			299,997		296,021	

- 주: 1) 국세통계연보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임
- 2)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취득세의 면제 등, 재산세의 감면, 업무무관경비 범위 축소,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정되지 않아 제외됨
- 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합하여 조세지출액이 표시되어 전액을 표에서 제외하였음. 조특법 제31조와 제32조를 합한 조세지출액은 2010년에 56억, 2011년에 75억임
-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2012년에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50억임
- 5)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되지 않음. 국세통계연보상 가업상속공제액(소득공제)은 2010년에 524억원, 2011년에 536억원임
- 6)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상에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출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국세통계연보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임
-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2012년에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3,904억임
- 8) 취득세 중과 제외, 대손 인정 범위 확대, 접대비 한도 증액, 양도소득세율 인하, 분납기한 연장, 건설용역 인도기준 적용,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유가증권 평가액 인하, 최저한세율의 인하, 가산세 한도 인하,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정되지 않아 제외됨
1. 기타사항: 조특법 제 7조의 2의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세액공제인데, 비중소기업이 네트워크 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대해서도 동 조세혜택이 주어짐. 한편 동 조세혜택의 취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관행의 보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조세제도로 분류하였으며, 인지세의 면제의 경우 2011년 금액은 2012년 잠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2012년도,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 정부

5. 중견기업의 현황과 세제혜택

가. 중견기업 현황

- 코트라가 발간한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1,291개로, 전체 기업체 비중으로 보면 0.0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고용 규모도 108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7.6% 수준임¹⁹⁾
 - 반면 상기 보고서에서는 연 매출액 100만~5천만유로(약 700억원)가 중견기업 기준인 독일은 전체 360만개 기업 가운데 43만개(11.8%)가 이에 해당했고, 영국은 0.7%, 일본은 3.7%로 나타남

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관련 세제혜택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에도 적용되게 되어서, 2011년 1월 1일 가업상속분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 기초공제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주어졌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201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며, 「법인세법」에서도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가는 추세임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매출액 2,000억원(2013년 이전은 1,500억원) 이하인 법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됨
 - 중견기업은 과거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비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함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함

19) 분류기준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 「법인세법」상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기존의 22%의 법인세율에서 2% 인하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Ⅲ.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과세제도

1. 미국

가. 개요

-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총 2,700만개의 기업 중 종업원이 500인 미만의 경우는 99.9%이며, 500인 미만의 기업의 매출액은 전체기업 매출액의 40.2% 비중임
- 종업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500인 미만의 기업은 전체기업의 99.6%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38.2%를 차지함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소기업(small busi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산업에서 종업원 5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 Ⅲ-1〉 미국 종업원 규모별 전체기업 구분

(단위: 개, 천달러)

종업원 수	기업 수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0명	21,708,021	991,791,563	46
100명 미만	5,942,758	7,768,030,463	1,307
100명 이상 ~ 500 명	88,586	3,612,050,221	40,775
500명 이상 ~ 1,000명	9,064	1,436,675,163	158,503
1,000명 이상 ~ 5,000명	7,320	4,012,445,996	548,148
5,000명 이상 ~ 10,000명	952	2,263,012,551	2,377,114
10,000명 이상	975	10,654,527,510	10,927,721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 2007(www.census.gov)

- 종업원이 있는 미국 기업을 매출액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총 기업 수 600만개 중 연 매출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 560만개로 전체기업 수의 93.8%를 차지함
 - 이에 반해 매출액 1억달러 이상의 기업은 2만여 개로 전체기업 중 0.34%이며 동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68.3%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 종업원 있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구분

(단위: 개, 천달러)

매출액 규모	기업 수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10만달러 미만	1,305,233	61,210,592	47
100만달러 미만	3,302,803	1,250,448,738	379
500만달러 미만	1,069,866	2,263,882,498	2,116
1,000만달러 미만	174,298	1,209,693,215	6,940
2,000만달러 미만	114,897	1,764,406,289	15,356
5,000만달러 미만	41,088	1,422,771,974	34,627
1억달러 미만	20,865	1,444,084,645	69,211
1억달러 이상	20,605	20,330,243,953	986,666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of U.S. business and Nonemployer Statistics(www.census.gov) 2007

- 기업 규모에 따른 정의는 Small Business Act에 의해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정하고 있음
 - SBA에서는 소기업의 차입보증, 컨설팅, 자금조달 등의 연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기업기준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제조업 중 인쇄업의 경우 종업원 500인, 소매업의 의류업종은 매출액 650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과세를 위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는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 별도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각 개별 조세지원제도 별로 대상이 되는 소기업(Small business)기준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개별조세지원제도별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

목표에 따라 소기업의 적용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제공함

- 다만, 상황에 따라서 소기업 일부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이 부여되나 일부에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²⁰⁾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 미국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 알코올 연료 및 바이오 디젤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제도가 있었으나 2011년 동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동 제도가 폐지되었음
 - 바이오 디젤 중 Agri-biodiesel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자의 경우 생산량 1갤런당 10센트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으며, 생산량 1,500만갤런까지를 한도로 하였음
 - 비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가) 소기업의 종업원 보험 세액공제

- 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복지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관련 비용 그리고 장애인 불편사항 개선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소기업이 종업원을 위한 건강보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일정액을 기여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함(IRC Sec. 45R)
 - 총수익(total receipts)이 1백만달러 미만이거나 풀타임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20) Gary Guenth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mall Business Tax Benefits: Overview and Economic Rationale, 2009

- 소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 퇴직연금 도입 초기비용의 50%를 연 500달러를 한도로 세액 공제함(IRC Sec. 45E)
 - 직전연도 급여가 최소 5,000달러 이상인 종업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나) 소기업의 장애인시설 세액공제

- 소기업이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연간 25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의 50%를 1만 250달러를 한도로 세액 공제함(IRC Sec. 44)
 - 총수익(total receipts)이 1백만달러 이하이거나 풀타임 종업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3)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 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일반소득세(regular income tax) 과세대상인 모든 납세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 최저한세 산출시 과세소득에 대하여 40,000달러의 과세면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과세 면제액 미만이면 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음
 - 설립 첫해는 모든 법인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최저한세적용에서 배제되고 설립 후 두 번째 해부터는 총수익액(total receipts)에 의해 적용 여부가 다음 <표 III-3>과 같이 결정됨

〈표 Ⅲ-3〉 최저한세 적용배제 법인

연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
최초 과세연도	총수익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
2년	첫해의 총수익이 500만달러 이하인 법인
3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총수익 평균이 750만달러 이하인 법인
4년 이후	과거 3년간의 총수익 평균이 750만달러 이하인 법인

나) 소규모 보험사에 대한 조세지원

- 소규모 생명보험사와 화재보험사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금면제, 소득의 일부 과세의 방식을 통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소규모 생명보험사(Small life insurance companies)의 소득공제전 소득금액(tentative LICIT)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3백만달러까지는 소득금액의 60%를 공제함(IRC Sec. 806)
 - 총자산이 5억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생명보험사에 해당함
- 소규모 화재보험사(Other Insurance companies)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IRC Sec. 831(a), 832 and 501(c))
 - 연간 총수익(total receipts)이 60만달러 미만이고 보험료 수입이 총수익의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규모 화재보험사에 해당함
 - 한편 상호보험사(mutual insurance companies)의 경우에는 연간 총수익이 15만달러 미만이고 보험료 수익이 총수익의 35%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면제됨
- 보험료 수익이 소규모인 화재보험사는 투자소득만 과세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IRC Sec. 831(b) and 834)
 - 보험료 수익이 120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이 소규모인 화재보험사에 해당함

- 투자소득이란 투자수입(gross investment income)에서 비과세이자, 투자비용, 부동산 비용, 감가상각비, 지급 또는 발생한 이자비용, 자산양도손실,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소기업에 대한 투자 조세지원

- 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장기보유 양도차익 과세제외, 소기업 주식 매각 후 신규 소기업 투자시 과세이연, 소기업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손의 통상소득공제 허용'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초과 보유 후 매도하는 투자자(Noncorporate taxpayer에 한함)의 경우 양도 차익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IRC Sec. 1202)
 - 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기업의 주식 발행전과 발행직후의 총자산이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80%가 engineering, health, law 등의 적절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함
 - 2009년 이후 취득분의 과세 제외 비율은 75%였고, 2010년 9월 이후 2012년 1월 이전 취득분은 100% 과세 제외하게 되었음
 - 주식의 발행 시기는 1993년 8월 10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식의 취득 수단이 현금이든지 현물이든지 상관없으나 원시취득에 한함
- 투자자(Noncorporate taxpayer에 한함)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소기업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은 투자자가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식 취득가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이연함(IRC Sec. 1045)
 -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5년 초과 보유 양도 차익 50% 과세제외와 동일함
 - 미인식된 이익은 신규로 취득한 소기업 주식의 취득가액(basis)을 감소시켜 향후 신규 취득한 주식의 손익이 인식될 때까지 과세이연하게 됨
- 개인투자자가 소기업에 투자한 후 손실을 보는 경우 동 손실 중 최대 5만달러(부부합산

은 10만달러)까지 통상손실(Ordinary loss)로 보고 통상소득에서 공제함(IRC SEC. 1244)

- 주식 발행 전과 후를 합쳐서 출자금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기업은 주식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연도 동안 총 수입에서 로열티, 배당, 이자, 연금, 주식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50% 미만이어야 함

□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가 발행한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의 손실금액은 통상손실(Ordinary loss)로 보고 통상소득에서 공제함(IRC SEC. 1242)

-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란 Small Business의 출자전환가능채무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의해 자격을 얻고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임

□ 소기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채무증권의 출자 전환으로 수령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 손실은 소기업투자회사의 통상손실(Ordinary loss)로 보고 통상소득에서 공제함(IRC SEC. 1243)

□ 투자자(개인 및 C corporation)는 공개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60일 이내에 전문 소기업 투자회사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매각이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음(IRC Sec. 1044)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는 25만달러까지(부부합산은 5만달러), 평생 (lifetime) 동안은 25만달러까지(부부합산은 50만달러) 과세이연이 가능함
- 전문소기업투자회사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의해 자격을 얻고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Sec 301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로서 소기업투자회사와 유사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소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음

4)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가) 주주규모별 납세 간소화

-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과 같은 재무적 수치에 따른 기업규모별 차별과세는 아니지만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된 내국법인 주주가 100명 이하이고, 모든 주주서면 동의를 있는 경우 신고에 의해 법인 단계의 과세를 거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 한 번의 과세만 이루어지는 S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함

나) 소기업의 현금주의 회계처리 허용

-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C법인 및 C법인의 파트너인 파트너십회사의 경우 세무 신고 시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원칙이나 소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처리도 허용하고 있음(Reg 1.466-1)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총수입이 5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함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 미국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35%)이 적용되는 개인서비스 회사를 제외하고는 과세소득의 크기에 따라 15~35%의 세율로 누진적으로 적용됨
 - 개인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는 의료, 법, 엔지니어, 건축, 회계, 보험 예술 그리고 자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용인이나 과거 서비스를 제공하던 퇴직 피용인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회사를 말함

〈표 Ⅲ-4〉 미국의 법인세율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세율
0 ~ 50,000	15
50,000 ~ 75,000	25
75,000 ~ 100,000	34
100,000 ~ 335,000	39
335,000 ~ 10,000,000	34
10,000,000 ~ 15,000,000	35
15,000,000 ~ 18,333,333	38
18,333,333 ~	35

2)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일반적으로 1997년 8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의 소급공제 기간은 2년이나, 소기업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모두 연장된 소급공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IRC Sec. 172)²¹⁾
 - 일반적으로 영업손실은 경우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2년간 소급공제하거나 2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며,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영업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총수입(total receipts)이 1,5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미국의 조세지출예산서(Analytical Perspectives 2013)에 따르면 2011년 총조세지출 추정액은 1조 1,700억달러임

21) www.ibfd.org / 2012 U.S. MASTER TAX GUIDE

- 한편, 위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 대비 0.09%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한정된 조세지원 중 최저한세 배제, 중소기업 주식 처분시 과세이연 등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로 그 지출액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존재함²²⁾
 -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나 누진 세율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조세혜택 또한 나타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종업원 보험 세액공제관련 조세지출액은 8.3억달러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액 중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장기보유 중소기업주식 양도차익 감면, 개인투자자의 중소기업 투자손실의 통상소득 의제 등의 순서로 조세지출액이 크지만 중소기업 종업원 보험세액공제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준임

〈표 Ⅲ-5〉 2011년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조세지출액	
		금액	비중
중소 기업에 한정된 조세지원	소규모 바이오 디젤 및 알코올 연료 생산자 세액공제	20	0.00171
	소규모 화재보험사의 세금감면	40	0.00341
	소규모 생명보험사의 소득금액 공제	30	0.00256
	장기보유 중소기업주식 양도차익 감면	60	0.00512
	개인투자자의 중소기업 투자손실의 통상소득 의제	60	0.00512
	소기업의 장애인시설 세액공제	20	0.00171
	소기업의 종업원 보험 세액공제	830	0.07081
	소계	1,060	0.09043
총조세지출액(추정)		1,172,205	100

자료: THE WHITE HOUSE, Analytical Perspectives, 2013

22) 과세소득규모별 세율구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배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보험료 수익이 소규모인 화재보험사의 투자소득과세방식 적용, 중소기업 발행주식 처분후 중소기업 주식 취득시 과세이연, 중소기업 발행주식 처분후 전문소기업투자회사 주식 취득시 과세이연,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투자손실의 통상소득 의제, 중소기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의 출자전환시 손실 통상소득 의제, 중소기업의 현금주의 회계처리 허용 및 100인 이하 주주 법인의 S법인 전환 허용에 관한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2. 일본

가. 개요

-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법인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3%이며,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5.9%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업종에서 비슷하나,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Ⅲ-6〉 산업별 규모별 기업 수

(단위: 개, %)

구분	연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대기업		합계 기업 수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광업	1999	3,074	99.8	2,633	85.5	5	0.2	3,079
	2001	2,618	99.7	2,276	86.6	9	0.3	2,627
	2004	2,306	99.8	2,027	87.7	5	0.2	2,311
	2009	2,059	99.8	1,844	89.4	4	0.2	2,063
건설업	1999	555,372	99.9	526,027	94.6	475	0.1	555,847
	2001	543,397	99.9	516,405	95.0	363	0.1	543,760
	2004	507,086	99.9	484,828	95.6	319	0.1	507,405
	2009	519,259	99.9	499,167	96.1	280	0.1	519,539
제조업	1999	599,512	99.6	532,691	88.5	2,382	0.4	601,894
	2001	548,830	99.6	489,306	88.8	2,121	0.4	550,951
	2004	489,115	99.6	433,917	88.4	1,941	0.4	491,056
	2009	446,499	99.5	394,281	87.9	2,036	0.5	448,535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999	521	95.2	274	50.1	26	4.8	547
	2001	510	94.8	266	49.4	28	5.2	538
	2004	490	94.6	262	50.6	28	5.4	518
	2009	786	96.7	528	64.9	27	3.3	813
정보통신업	1999	26,314	96.3	15,566	57.0	1,014	3.7	27,328
	2001	32,240	96.8	19,486	58.5	1,070	3.2	33,310
	2004	30,815	96.5	18,358	57.5	1,129	3.5	31,944
	2009	49,503	97.6	34,526	68.1	1,222	2.4	50,725

〈표 Ⅲ-6〉의 계속

구분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소규모기업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운수업	1999	91,918	99.6	71,969	78.0	328	0.4	92,246
	2001	86,046	99.7	66,999	77.6	281	0.3	86,327
	2004	80,479	99.7	62,345	77.2	262	0.3	80,741
	2009	81,373	99.7	62,361	76.4	251	0.3	81,624
도매, 소매업	1999	1,378,112	99.6	1,148,472	83.0	6,043	0.4	1,384,155
	2001	1,309,984	99.5	1,092,042	83.0	5,938	0.5	1,315,922
	2004	1,160,469	99.6	958,117	82.2	4,789	0.4	1,165,258
	2009	1,047,079	99.6	869,196	82.7	4,224	0.4	1,051,303
도매업	1999	293,903	99.2	203,261	68.6	2,259	0.8	296,162
	2001	255,587	99.1	176,374	68.4	2,394	0.9	257,981
	2004	252,390	99.2	176,360	69.3	2,130	0.8	254,520
	2009	241,917	99.3	175,592	72.1	1,693	0.7	243,610
소매업	1999	1,084,209	99.7	945,211	86.9	3,784	0.3	1,087,993
	2001	1,054,397	99.7	915,668	86.6	3,544	0.3	1,057,941
	2004	908,079	99.7	781,757	85.8	2,659	0.3	910,738
	2009	805,162	99.7	693,604	85.9	2,531	0.3	807,693
금융, 보험업	1999	33,118	98.9	31,842	95.1	363	1.1	33,481
	2001	34,281	99.1	33,126	95.8	313	0.9	34,594
	2004	30,192	99.1	29,120	95.6	283	0.9	30,475
	2009	34,672	99.3	33,546	96.0	258	0.7	34,930
부동산업	1999	294,976	100.0	291,309	98.7	102	0.0	295,078
	2001	297,082	100.0	293,782	98.9	94	0.0	297,176
	2004	287,005	100.0	283,704	98.8	91	0.0	287,096
	2009	352,548	99.9	345,065	97.8	303	0.1	352,851
음식업, 숙박업	1999	772,760	99.9	683,485	88.3	1,158	0.1	773,918
	2001	742,710	99.9	655,641	88.2	914	0.1	743,624
	2004	677,390	99.9	597,980	88.2	870	0.1	678,260
	2009	604,050	99.8	524,811	86.7	936	0.2	604,986
의료, 복지	1999	169,588	99.8	132,772	78.2	275	0.2	169,863
	2001	175,542	99.9	134,995	76.8	261	0.1	175,803
	2004	178,912	100.0	136,098	76.0	80	0.0	178,992
	2009	194,822	99.9	143,584	73.6	243	0.1	195,065

〈표 Ⅲ-6〉의 계속

구분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기업 수
		기업 수	구성비	소규모기업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교육, 학습지원업	1999	115,764	99.9	105,171	90.7	154	0.1	115,918
	2001	119,100	99.9	108,115	90.7	122	0.1	119,222
	2004	114,722	99.9	104,167	90.7	121	0.1	114,843
	2009	110,895	99.9	100,213	90.3	124	0.1	111,019
복합서비스사 업	1999	3,590	100.0	3,588	99.9	0	0.0	3,590
	2001	3,960	100.0	3,957	99.9	0	0.0	3,960
	2004	3,588	100.0	3,587	100.0	0	0.0	3,588
	2009	3,617	99.9	3,604	99.6	2	0.1	3,619
기타서비스업	1999	792,144	99.7	682,982	86.0	2,016	0.3	794,160
	2001	793,308	99.8	685,773	86.2	1,917	0.2	795,225
	2004	763,773	99.8	662,353	86.5	1,875	0.2	765,648
	2009	754,102	99.7	652,635	86.3	2,016	0.2	756,118
비1차산업 계	1999	4,836,763	99.7	4,228,781	87.2	14,341	0.3	4,851,104
	2001	4,689,608	99.7	4,102,169	87.2	13,431	0.3	4,703,039
	2004	4,326,342	99.7	3,776,863	87.1	11,793	0.3	4,338,135
	2009	4,201,264	99.7	3,665,361	87.0	11,926	0.3	4,213,190

주: 1. 기업 수 = 회사 수 + 개인사업소(단독사업소 및 본소·본사·본점사업소)
 2. 중소기업법의 정의에 따라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도매업,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은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도매업은 1억엔 이하,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000만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3. 상시종업원 20인 이하(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인 기업을 소규모기업이라 함
 4. 소규모기업의 구성비는 전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5. 산업분류는 2007년 11월 개정된 것을 따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12

-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를 따로 구분하고 있음
 - 범위 판정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로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만 존재함

〈표 Ⅲ-7〉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업종	중소기업		소기업
	자본금	상시종업원 수	상시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물류, 기타산업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20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5명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100명 이하	5명 이하
소매업	5천만엔 이하	50명 이하	5명 이하

- 일본은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체로 「법인세법」 제66조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이면서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인이며, 일부 조세지원은 「조세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의 특별 상각 및 세액 공제

- 중소기업은 1998년 6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계 및 장비 등을 신규로 취득 또는 제작하여 국내 제조업, 건설업 등의 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상각과 특별세액공제 중 택일할 수 있음
- 특별상각은 감가상각한도액을 보통의 상각한도액에 취득가액의 30%를 추가로 증액시켜주는 것으로 취득자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5%를 기준으로 30%를 증액하며, 그 밖의 자산은 취득가액의 30%를 증액함
 - 자본 금액이 1억엔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없는 법인²³⁾ 중 상시 종업원 수가 1,000

23) 일본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 통달 일부 개정의 취지설명자료에서 자본금이 없는 법인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667조 제1항의 조합계약 등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포함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합 등을 들고 있으며, 동 조합 사업의 이득금액을 과세함에 있어 조합의 수입, 지출 등을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수입, 지출로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먼저 조합에서 계산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산출한 후 동 이익 및 손실을 각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경우 조합원에게는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등은 적용치 아니함)도 선택이 가능

명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비중소기업이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비중소기업들(2개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특별 세액공제액은 취득가액의 7%(선박은 취득가액의 75%의 7%)이며, 당해연도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한도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 대상법인은 특별상각 대상 중소기업 중 자본 금액이 3,000만엔 이하인 법인임

나) 중소기업 임대 자산의 특별 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기계 및 장비 등을 임대하고 국내의 제조업, 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연도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임대비용의 60%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취득가액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의 특별 상각 및 세액 공제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2008년 4월 1일 이후 임대계약 체결분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 계약은 물품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가 균등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연구개발세제를 제외하고 조세특별조치법상의 다른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함. 이때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동 조합의 이익 및 손실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에서 발생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있는 경우 동 조합을 자본금 없는 법인으로 간주하여 이익 및 손실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2)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 경감세율 적용

- 일본의 법인세율은 일반기업(25.5%)과 중소기업의 경감세율(19%, 15%)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감세율은 중소기업의 연소득 800만엔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자본금 및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 중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연소득 중 800만엔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는 19%를 적용함
 - 법인의 지분 100%를 자본금 및 출자금이 5억엔 이상인 타법인이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 지분의 100%를 그룹사(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들)에 속한 기업 중 자본금 및 출자금 5억엔 이상인 법인들이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표 Ⅲ-8〉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일반	중소기업
8백만엔까지	25.5	19, 15
8백만엔 초과	25.5	25.5

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허용

- 일본에서는 접대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504만엔을 한도로 하여 접대비의 90%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법인세율 경감세율 적용기준과 동일함
 -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영업 관련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일본에서는 접대비의 출처와 금액 크기가 사회문제화되어 1982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 중소기업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 대손충당금은 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은행, 보험사 및 이와 준하는 법인과 리스자산 관련 채권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거래채권을 가진 법인만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과거 일본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법인 외에도 비중소·비금융법인을 포함한 일반법인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인정대상 법인과 채권을 법에 열거한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 다만, 과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던 법인에게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법인세율 경감세율 적용기준과 동일하고, 중소기업은 대손충당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별평가금전채권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일괄평가금전채권은 대손실적률과 법정률 중에 선택 적용이 가능함
 - 과거 일본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개별평가금전채권(예를 들어 회사경생법상 채권으로 보지 않는 채권의 장부가액은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등 채권 종류별로 손금산입률이 열거되어 있음)과 대손실적률에 따라 손금산입액이 결정되는 일괄평가금전채권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손실적률 대신 법정률을 사용할 수 있었음

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및 이월공제

- 중소기업의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은 1년이며, 이월 공제시 공제금액의 한도 없이 사용이 가능함
 - 비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공제는 가능하나, 공제시 공제받는 연도의 과세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기준과 동일함
- 일본은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2012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2008년 4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이월기간을 과거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였고, 비중소기업에 대한 한도규정이 신설되었음
 - 비중소기업에 대한 한도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결손금 이월 및 소급공제는 중소 및 비중소 모두 청색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본은 1947년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950년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음. 청색신고제도는 결손금 이월, 회수불능채권의 일정액 손금산입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 백색신고가 있는데 세무상 혜택이 없는 반면 수지계산서(수입과 지출)만 작성하여 신고함

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조세지원

- 일본은 개인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데, 투자시점에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매각 후 손실의 경우에도 이월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음²⁴⁾
 - 개인이 설립 3년 미만의 특정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총소득금액의 40%와 1,000만엔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투자액을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하고, 설립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투자액 전액을 한도 없이 동일연도의 다른 주식양도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특정 중소 벤처기업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른 주식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가 모두 불가능하면 이후 3년 내에 이월 공제할 수 있음

24) 김진수,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8

바) 중소기업에 대한 동족회사 유보금제도 미적용

- 2007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자본금 1억엔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동족회사 유보금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특정인이나 가족구성원들이 법인세율보다 높은 소득세의 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족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동족회사 유보금 제도라 함

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제혜택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 사업승계에 관련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경영자인 혈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납세 유예함
 - 사업승계를 위해 상속 전부터 승계가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을 포함한 주식 총수의 3분의 2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의 상속세의 80%를 납부 유예함
 -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하여야 함
 - ① 승계자의 대표직 유지
 - ②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
 - ③ 대상 주식 계속 보유
 - ④ 상장회사, 자산관리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유흥업을 영위하지 말 것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 소액자산 특례상각

- 중소기업이 취득가액 30만엔 미만의 유·무형자산을 200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특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자본 금액이 1억엔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없는 법인²⁵⁾ 중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비중소기업이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비중소기업들(2개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동 특례 규정은 기구 및 비품, 기계장치 등의 유형 자산 외에 소프트웨어,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도 그 대상이며, 중고 자산에도 적용되나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격의 합계액이 300만엔(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300만엔에 대하여 월할계산한 금액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엔을 한도로 함
 - － 본 특례규정은 연구개발세제를 제외한 조세특별조치법상의 특별상각, 세액공제, 압축기장과 중복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격이 10만엔 미만의 것 또는 일괄상각 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없음
 - － 참고로 취득가액 10만엔 미만의 자산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

25) 일본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 통달 일부 개정의 취지설명자료에서 자본금이 없는 법인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67조 제1항의 조합계약 등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포함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합 등을 들고 있으며, 동 조합 사업의 이득금액을 과세함에 있어 조합의 수입, 지출 등을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수입, 지출로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먼저 조합에서 계산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산출한 후 동 이익 및 손실을 각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경우 조합원에게는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등은 적용치 아니함)도 선택이 가능함. 이때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동 조합의 이익 및 손실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에서 발생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있는 경우 동 조합을 자본금 없는 법인으로 간주하여 이익 및 손실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액 전액을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함

나)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설비 특별 상각 및 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에너지 환경 부하 저감추진 설비 등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 한도액으로 일반 상각한도액을 증액시키거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20%를 한도로 하여 취득가액의 7% 상당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 비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특례상각만을 선택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취득가액 30만엔 미만 유·무형자산 특례상각의 경우와 동일함

2)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초기술강화세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취득가액 30만엔 미만 유·무형자산 특례상각의 경우와 동일함

- 중소기업기초기술강화세제 외에 일본의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는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 특별시험연구에관한세액공제, 시험연구비금액증가세액공제가 있으며, 동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중소기업기초기술강화세제를 선택한 중소기업은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와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초기술강화세제는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시험연구비의 12%를 세액 공제함

- 비중소기업이 받아야 하는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와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 공제는 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와 동일하나 국가시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최대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됨
 - 비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연구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시험연구비의 10%를 세액공제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험연구 비율의 0.2%에 8%를 더한 비율로 세액공제 받게 됨
 - 한편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는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국가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12%: 시험연구비총액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사업연도의 기말 고용자 수가 전기 말 고용 수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당해 사업 연도 법인세의 20%를 한도로 하여 증가자 수에 20만엔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비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한도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임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취득가액 30만엔 미만 유·무형자산 특례상각의 경우와 동일함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일본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3. 영국

가. 개요

- 영국의 중소기업 분포는 EU 국가의 중소기업에 비해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초소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8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서임
 - 초소기업은 EU 회원국 전체의 평균 비율인 92.2%보다 다소 낮았으나 소기업, 중기업은 EU 회원국 전체의 평균 비율보다 다소 높음
 - 대기업의 비중은 EU 회원국의 대기업 비중에 비해 2배가 더 많음

〈표 Ⅲ-9〉 2011년 영국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율	EU27 비율
초소기업	1,481,060	89.5	92.2
소기업	142,645	8.6	6.5
중기업	25,233	1.5	1.1
중소기업 소계	1,648,938	99.6	99.8
대기업	6,132	0.4	0.2
총계	1,655,070	100	100

자료: SBA Fact Sheet 2012, EU

- 기업규모에 따른 정의는 회사법(Company Act 2006)에서 규정하고 있음
 - 중기업의 판정기준: ① 매출액은 2,28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② 자산총액은 1,14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③ 종업원 수는 250인 이하이어야 함
 - 소기업의 판정기준: ① 매출액은 56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② 자산총액은 28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③ 종업원 수는 50인 이하이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과세를 위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는 관련 조세특례에서 별도로

규정함

- 다만 관련 규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기준을 EU의 중소기업 범위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음
- EU는 단일시장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EU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1996년에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함
 - 2003년에는 중소기업 정의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을 채택하여 2005년부터 시행함
- EU 위원회는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범위규정을 둠
 - 범위의 판정기준은 매출액, 자산총액 및 종업원 수입

〈표 Ⅲ-10〉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

구분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초소기업	2백만유로 이하	2백만유로 이하	10명 미만
소기업	1천만유로 이하	1천만유로 이하	50명 미만
중기업	5천만유로 이하	4.3천만유로 이하	250명 미만

자료: The new SME definition, EU 집행위원회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 특정 소기업 주식취득 소득공제 등(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투자자가 비상장 소기업(small company)에 투자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함²⁶⁾
 - 적용대상이 되는 비상장 소기업은 소규모의 고위험 비상장 회사임²⁷⁾

26) <http://www.hmrc.gov.uk/eis/part1/1-1.htm>

- 소규모 고위험 비상장 회사는 ①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기업으로 ② 비상장회사이어야 하고 ③ 투자 이전에 자산총액이 700만파운드에 미달하여야 하고 ④ 투자이후에도 자산총액이 800만파운드에 미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2011년 4월 6일 이전에는 공제율을 20%로 적용하였음
 - 연간 공제한도는 30만파운드이며 동일한 주식에 대한 공제한도는 100만파운드임
 - 의무보유기간은 3년임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위의 비상장 소기업(small company) 주식을 3년간 보유 후 처분할 경우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는 면제됨²⁸⁾
- 또한 비상장 소기업 주식의 처분 시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손실액은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음

나) 특정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 적격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경우 그 스톡옵션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함²⁹⁾
- 적격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자회사 요건, 규모 요건, 종업원 요건 및 사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독립성 요건: 주주인 회사의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거나 다른 회사나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야 함
 - 자회사 요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함
 - 규모 요건: 자산총액이 3,00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함
 - 종업원 요건: 종업원 수는 250명 이하이어야 함
 - 사업 요건: 회사는 영국 안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

27) <http://www.hmrc.gov.uk/eis/index.htm>

28) <http://www.hmrc.gov.uk/eis/part1/1-1.htm>

29) <http://www.hmrc.gov.uk/shareschemes/emi-new-guidance.htm#3>

동산·유가증권의 중계업, 은행과 같은 금융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부동산개발업, 조선·철강제조업 등을 제외함

- 옵션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시점은 옵션 부여일로 의제되어 사업용자산 장기보유공제(business assets taper relief)의 적용을 받음
 - 사업용자산 장기보유공제: 사업용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1~2년인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50%만을 과세하며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25%만을 과세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다)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 매출액이 77,000파운드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77,000파운드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2)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가) 현금주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 소기업은 현금주의 회계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135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임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임

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연장 가능

- 소기업은 연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
 - 현행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은 우수신고자(good VAT compliance record)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135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 임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 임

다)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제도(VAT Flat rate Scheme)

- 적격 소기업은 공급가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적격 소기업: 차기 공급가액이 15만파운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단일세율은 업종에 따라 공시됨
 -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업종에 따른 단일세율은 다음의 <표 Ⅲ-11>과 같음
 - 적격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표 Ⅲ-11〉 VAT 단일세율표

(단위: %)

Category of business	세율
Accountancy or book-keeping	14,5
Advertising	11
Agricultural services	11
Any other activity not listed elsewhere	12
Architect, civil and structural engineer or surveyor	14,5
Boarding or care of animals	12
Business services that are not listed elsewhere	12
Catering services including restaurants and takeaways	12,5
Computer and IT consultancy or data processing	14,5
Computer repair services	10,5
Dealing in waste or scrap	10,5
Entertainment or journalism	12,5
Estate agency or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12
Farming or agriculture that is not listed elsewhere	6,5
Film, radio, television or video production	13
Financial services	13,5
Forestry or fishing	10,5
General building or construction services*	9,5
Hairdressing or other beauty treatment services	13
Hiring or renting goods	9,5
Hotel or accommodation	10,5
Investigation or security	12
Labour-only building or construction services*	14,5
Laundry or dry-cleaning services	12
Lawyer or legal services	14,5
Library, archive, museum or other cultural activity	9,5
Management consultancy	14
Manufacturing fabricated metal products	10,5
Manufacturing food	9
Manufacturing that is not listed elsewhere	9,5
Manufacturing yarn, textiles or clothing	9
Membership organisation	8
Mining or quarrying	10
Packaging	9
Photography	11

〈표 Ⅲ-11〉의 계속

Category of business	세율
Post offices	5
Printing	8.5
Publishing	11
Pubs	6.5
Real estate activity not listed elsewhere	14
Repairing personal or household goods	10
Repairing vehicles	8.5
Retailing food, confectionary, tobacco, newspapers or children's clothing	4
Retailing pharmaceuticals, medical goods, cosmetics or toiletries	8
Retailing that is not listed elsewhere	7.5
Retailing vehicles or fuel	6.5
Secretarial services	13
Social work	11
Sport or recreation	8.5
Transport or storage, including couriers, freight, removals and taxis	10
Travel agency	10.5
Veterinary medicine	11
Wholesaling agricultural products	8
Wholesaling food	7.5
Wholesaling that is not listed elsewhere	8.5

5) 조세회피 방지제도

-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수취하는 배당금은 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나 소기업이 수취하는 배당금은 영국 국내 또는 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지역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이어야 함³⁰⁾
 - 소기업은 〈표 Ⅲ-10〉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의 소기업 정의에 따름
 - 즉, 매출액이 1천만유로이거나 자산총액이 2백만유로 이하이고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됨
 -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배당금은 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30) <http://www.hmrc.gov.uk/manuals/intmanual/INTM652030.htm>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초년도공제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간에 차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연간투자공제가 적용됨³¹⁾
 - 따라서 비중소기업과 차이가 없음
 - 연간투자공제: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자본지출액의 100%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제도임
 - 공제대상 자산: 기계설비와 기계장치에 관한 자본지출액
 - 적용대상 사업자: 규모와 설립형태에 제한 없음

- 2008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특정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초년도공제(FYA)를 적용할 수 있음³²⁾
 - 특정 사업용자산: 사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기계류 등
 - 다만 영구적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 있거나 차량·선박·철로와 같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³³⁾
 - 초년도공제: 취득한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즉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대상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³⁴⁾
 - 중기업의 판정기준: ① 매출액은 2,28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② 자산총액은 1,14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③ 종업원 수는 250인 이하이어야 함
 - 소기업의 판정기준: ① 매출액은 56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② 자산총액은 280만파운드 이하이어야 하고, ③ 종업원 수는 50인 이하이어야 함

31) IBFD Country Analysis, United Kingdom

32) sec. 44. Capital Allowances Act 2001

33) sec. 46(2). Capital Allowances Act 2001

34) sec. 47(2), (4). Capital Allowances Act 2001, sec. 382, 465 Companies Act 2006

2)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의 200%를 소득에서 공제함³⁵⁾
 - 연구개발비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적용됨
 - 대기업의 적용비율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130%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이 2012년 4월 1일 이후에는 225%로 인상될 예정(의회 승인이 필요)

- 과세소득이 없어 연구개발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서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보조금은 연구개발장려금(payable tax credit)임

-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동일함³⁶⁾
 -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임
 - ① 종업원 수가 250인 이하이어야 함
 - ② 연매출액이 5,000만유로 이하이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금액이 4,300만유로 이하이어야 함

- 중소기업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³⁷⁾

3)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 소액 과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과세소득이 소액인 경우, 즉 small profit에 해당되는

35) <http://www.hmrc.gov.uk/ct/forms-rates/claims/randd.htm#2>

36) SCHEDULE 20 part I. sec. 2, Finance Act 2000

37) <http://www.hmrc.gov.uk/manuals/cirdmanual/CIRD92000.htm>

경우, 법인세율은 경감세율이 적용됨³⁸⁾

- small profit: 30만파운드에 미달하는 과세소득
- 과세소득이 30~150만파운드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의 주세율(Main rate)을 적용받으나 한계공제(marginal relief)를 받을 수 있음³⁹⁾

$$\text{한계공제액} = (U - A) \times \frac{N}{A} \times F$$

U = 150만 파운드(상한)

A = N +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Franked Investment Income)

N = 총과세소득

F = 표준공제율(standard fraction), 2012년에는 1%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법인세 주세율(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4%가 적용됨

〈표 Ⅲ-12〉 영국의 법인세율

구분	2010	2011	2012
Small profits rate	21%	20%	20%
Standard Fraction	7/400	3/200	1/1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8%	26%	24%

자료: <http://www.hmrc.gov.uk/rates/corp.htm>

- 과세소득이 소액인 회사에 대한 일반규정이나 과세소득이 낮은 회사는 주로 중소기업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규정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됨

4)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이전가격제도 적용배제: 중소기업이 수행한 거래에 대해서 이전가격제도의 적용이 배

38) <http://www.hmrc.gov.uk/rates/corp.htm>

39) <http://www.hmrc.gov.uk/ct/forms-rates/claims/marginal-rate.htm>

제됨⁴⁰⁾

- 다만 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 설립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전가격제도를 적용함
- 이전가격제도: 다른 과세권역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제도
- 중소기업의 범위는 <표 Ⅲ-10>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제도가 적용됨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영국의 2011-12년 총조세지출 추정액은 3,248억파운드임
 - 특정 소기업 주식취득 소득공제(EIS)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출액은 주된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의 1%에 미달함
 - 한편 영국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총 조세지출액이 아닌 주된 조세지출액만을 확인이 가능함
- 특정 소기업 주식취득 소득공제(EIS)의 조세지출액은 230억파운드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액 중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소액 과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순서로 조세지출액이 큼
-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제도(VAT Flat rate Scheme), 현금주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이전가격제도 적용배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액이 발견되지 않음

40) <http://www.hmrc.gov.uk/manuals/intmanual/intm412070.htm>

〈표 Ⅲ-13〉 2012-13년 영국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단위: 억파운드, %)

구분		조세지출액	
		금액	비중
중소기업에 한정된조세 지원	특정 소기업 주식취득 소득공제 등(EIS)	230.0	7.08
	특정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EMI)	0.8	0.02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17.5	0.54
	소계	248.3	7.64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 조세지원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9.2	0.28
	소액 과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21.6	0.67
	소계	30.8	0.95
합계		279.1	8.59
주된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합계		3,248.0	100.00

주: 1.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 조세지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일 경우 공제율 등에 있어서 조세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조세지출액 금액에는 해당 조세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Tax expenditures and ready reckoners, HMRC

4. 프랑스

가. 개요

□ 프랑스의 중소기업 분포는 EU 국가의 중소기업 분포와 유사함

- 초소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9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서임
- 초소기업은 EU 회원국 전체의 평균 비율인 92.2%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기업, 중기업은 EU 회원국 전체의 평균 비율보다 다소 낮음
- 대기업의 비중은 EU 회원국과 거의 유사함

〈표 Ⅲ-14〉 2011년 프랑스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율	EU27 비율
초소기업	2,218,370	93.1	92.2
소기업	137,510	5.8	6.5
중기업	21,418	0.9	1.1
중소기업 소계	2,377,298	99.8	99.8
대기업	4,665	0.2	0.2
총계	2,381,963	100	100

자료: SBA Fact Sheet 2012, EU

- 프랑스는 2005년에 중소기업진흥법(LOI n° 2005-882 du 2 aout 2005 en faveu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를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Annex I to Regulation (EC) No 70/2001을 준용한다고 함
 - 또한 조세특례를 위해 기업규모를 규정할 때에는 개별적인 특례제도에서 별도로 범위를 규정함

- 개별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요건은 종업원 수, 매출액이나 자산가액, 주주의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으로는 R&D 이월세액공제의 조기환급, 저세율 적용,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자본이득의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가) 사업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액공제

- 납세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격 중소기업의 사업양수를 위하여 부담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음⁴¹⁾
 - 적격 중소기업: 규모요건과 지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규모 요건: 매출액이 5,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배 요건: 납세자는 인수한 중소기업의 지배권(majority interest)을 가져야 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납세자는 인수한 주식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5년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은 환수됨
 - 감면세액은 2만유로를 한도로 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나) 특정 중소기업(SME)의 자본이득세 감면

- 특정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30만유로 이하로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됨
 - 특정 중소기업: 개인이나 다른 중소기업(SME)의 지분율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75% 이상인 중소기업
 - 사업장의 양도가액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제외함
 - 양도가액이 30만~50만유로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만 감면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41) article 199 terdecies OB of the CGI

- 자본이득은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표준법인세율이 적용됨
 - 표준법인세율: 33 $\frac{1}{3}$ %
 - 다만 상장된 부동산 과다보유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 과다보유 회사: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2)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가) 이월 R&D 세액공제액 조기 환급제도

- 적격 중소기업(SME)은 R&D 세액공제액 중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음
 - 적격 중소기업: 중소기업(아래의 종업원 요건,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함⁴²⁾
 - 종업원 요건: 연평균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임
 - 규모 요건: 매출액이 5,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설 혁신기업, 성장 중소기업도 조기환급 대상임
 - 적격 중소기업, 신설 혁신기업, 성장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R&D 세액공제: 프랑스 기업은 적격한 연구개발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율: 1억유로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
 - 다만 설립된 첫해는 40%, 두 번째 해에서는 35%가 적용됨
 - 적격한 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비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EU나 EEA

42) Article 44 sexies-0 A of CGI

역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어야 하고, ③ 프랑스 회사의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이후 3년간 이월공제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제혜택상 차이는 없음

나) 신설 혁신기업(innovative new enterprises)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신설 혁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감면 첫 연도에는 100%, 두 번째 연도에는 50% 감면
 - 2011년 말까지는 최초 3개 연도는 100%, 이후 2개 연도에는 50% 감면
 - 신설 혁신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신설 혁신기업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아래의 종업원 요건, 규모 요건, 신설 요건 및 지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함⁴³⁾
 - 종업원 요건: 연평균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임
 - 규모 요건: 매출액이 5,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설 요건: 설립된 지 8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비용 요건: 공제가능 경비 중 15%가 R&D 비용이어야 함
 - 독립성 요건: 개인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개인이 최소한 50%의 지분을 가진 기업에 의해 최소 50%의 지분율로 지배되어야 함
 - 설립 요건: 해당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설립되어서는 안 됨

다) 성장 중소기업(growing SME)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성장 중소기업은 직전 2년간 실제 납부세액의 평균을 초과한 산출세액에 급여증가율 (15%를 한도로 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⁴⁴⁾

43) Article 44 sexies-0 of CGI

- 성장 중소기업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임
 - 법인 요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함
 - 종업원 요건: 종업원은 250명 이하이어야 함
 - 규모 요건: 매출액이 5,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독립성 요건: 최대주주인 개인의 지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앞의 규모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는 안 됨
 - 세액공제 기간 중에는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여야 함
- 성장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2010년까지 시행된 제도로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음

라) 수출업무직원 채용비용 세액공제(tax credit)

- 수출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그 직원의 채용(hiring)과 관련한 비용의 5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수출업무: EU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만 해당
 - 다만 중소기업이 아직 수출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액은 2년간 4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3)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

- 적격 중소기업(SME)의 경우 38,120유로까지의 과세소득(profit)에 대해서는 저율인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38,12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표준법인세율은 33 $\frac{1}{3}$ %을 적용함⁴⁵⁾

44) Article 220 decies CGI

- 적격 중소기업: ① 지배요건, ② 규모요건 및 ③ 자본충실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독립성요건: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이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율이 최소 75% 이상이어야 함
 - ② 규모요건: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이어야 함
 - ③ 자본충실요건: 자본금은 완전히 납입되어야 함
- 납부세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표준법인세율 33 $\frac{1}{3}$ %에 표준법인세율의 3.3%를 부가하여 34.43%임
- 한편 매출액이 2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34.43%에 5%의 부가세 (surtax)를 추가하여 부담하여 36.10%의 세율을 적용함

나) 사업용자산 자본이득의 법인세 면제

- 적격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자산(business asset)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법인세가 면제됨
 - 적격 중소기업: 용역 매출액이 연간 9만유로 이하인 기업이나 재화 매출액이 연간 25만유로 이하인 기업
 - 다만 용역 매출액이 연간 12.6만유로 이하이거나 재화 매출액이 연간 35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일부만 면제됨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다) 이사가 보유 자사주의 자본이득 면제

- 중소기업의 이사가 퇴직 시까지 보유한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소득세를 면제함
 - 이사는 퇴직 후 8년이 경과한 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됨

라) 적격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 EEA 역내에 설립하는 적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보유하는 납세자는 투자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음
 - 공제한도: 연간 9,000유로임
 - 적격 중소기업: 개인 투자자의 직·간접적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 적격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마) 중소기업 주식 인수금액 세액공제

- 적격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⁴⁶⁾
 - 다만 인수한 주식은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5년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을 환수함
 - 적격 중소기업은 아래의 종업원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임
 - 종업원 요건: 종업원은 250명 이하이어야 함
 - 규모 요건: 매출액이 5,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4,3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감면세액은 2만유로를 한도로 함
 - 다만 적격 소기업의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는 5만유로로 증액됨
 - 적격 소기업은 아래의 종업원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임
 - 종업원 요건: 종업원은 50명 이하이어야 함
 - 규모 요건: 매출액이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1,0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감면세액은 이후 4년 동안 이월공제됨
 - 적격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하는 금액의

46) article 199 terdecies-0 A of the CGI

25%를 세액공제함⁴⁷⁾

○ 조세지출액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6,700만유로와 6,000만유로로 예상됨

- 코르시카(Corsica)에서 설립한 회사(LLC 포함)의株式이 총자산의 60%를 초과하는 적격 중소기업의株式을 인식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⁴⁸⁾

바) 외국지점과 외국자회사 결손금공제

- 적격 중소기업은 EU 회원국이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자회사의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음⁴⁹⁾
 - 자회사의 경우 최소한 지분의 9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적격 중소기업은 종업원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종업원 요건: 2,000명 이하이어야 함
 - 독립성 요건: 해당 중소기업의 지분율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또는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들을 합쳐서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 코르시카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코르시카(Corsica)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함⁵⁰⁾
 -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는 공제율이 10%로 인하
 - 미공제된 세액공제액은 9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47) article 199 terdecies-0 A VII bis CGI

48) Article 199 terdecies-0 A IV CGI

49) Article 209 C CGI

50) Article 1466 C, 1586 nonies III CGI

아) 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부유세 세액공제

- 적격 소기업에 대한 출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유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⁵¹⁾
 - 적격 소기업은 ① EU 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의는 Regulation (EC) No 800/2008 of 6 August 2008의 Annex I 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하고 ② 상업, 제조업, 농업 등을 영위하여야 하고(유가증권과 같은 동산의 관리활동을 제외), ③ 유럽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④ 해당 기업의 주식이 프랑스에서 상장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유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액공제 한도: 4만 5,000유로
 - 적격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부유세: 프랑스 거주자는 그가 보유한 총자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3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부유세를 납부하여야 함
 - 부유세 세율: 순자산 금액이 130만~300만유로인 경우에는 0.25%, 3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0.5%임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 추계계산: 매출액이 업종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액의 71%(또는 51%)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함⁵²⁾
 - 업종별 매출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재 상품(marchandises)과 식품 판매업이나 주택건설업(직·간접적으로 임대 사용되는 주택건설업은 제외): 8만유로

51) 885-0 V bis I CGI

52) Article 50-0 CGI

- 이를 제외한 다른 업종: 3만 2,000유로
- 업종별 매출액 한도가 8만유로인 기업의 공제율은 71%이며, 3만 2,000유로인 기업의 공제율은 50%임
- 소규모사업자가 법인으로 법인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됨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프랑스의 2012년 총조세지출 추정액은 659억 3,000만유로임
 -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위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의 1%에 미달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제도의 조세지출액은 25억유로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액 중 가장 많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제도는 총조세지출의 3.79%에 달함
 - 다음으로 중소기업 주식 인수금액 세액공제, 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부유세 세액공제의 순서로 조세지출액이 큼
- 프랑스의 경우 제도상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 추계계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지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세지출 예산서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보여주지 아니함
 -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 추계계산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상 추계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표시되었고 적격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R&D 세액공제액 조기 환급제도, 특정 중소기업(SME)의 자본이득세 감면, 수출업무직원 채용비용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자본이득의 법인세 면제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표 Ⅲ-15〉 2012년 프랑스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단위: 억유로, %)

구분		조세지출액	
		금액	비중
중소기업에 한정된 조세지원	사업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액공제	0.02	0.00
	이사가 보유 자사주의 자본이득 면제	1.10	0.17
	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부유세 세액공제	1.66	0.25
	외국지점과 외국자회사 결손금공제	0.05	0.01
	코르시카 투자세액공제	0.01	0.00
	중소기업 주식 인수금액 세액공제	2.79	0.42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	25.00	3.79
	신설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0	0.17
소계		31.73	4.81
총조세지출액(추정)		659.29	100

자료: DEPENSES FISCALES 2012

5. 호주

가. 개요

- 호주의 기업체 중 95%가 고용인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으며, 3.8%가 고용인원 200인 미만의 중기업이고 대기업은 0.3%에 불과함

〈표 Ⅲ-16〉 2011년 기업 규모별 호주 기업 수

(단위: 개, %)

구분	총기업 수	소기업 수	비중
농림수산업	198,163	193,961	97.9
광업	8,155	7,509	92.1
제조업	90,228	80,284	89.0
서비스업	1,788,775	1,717,009	96.0
합계	2,085,321	1,998,763	95.8

자료: 호주정부, AUSTRALIAN SMALL BUSINESS KEY STATISTICS AND ANALYSIS

- 호주의 근로자 중 70%를 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48%에 달하고 있음

〈표 Ⅲ-17〉 2011년 기업규모별 호주 기업의 종업원 비중

(단위: 천명)

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합계
농림수산업	438	56	16	510
광업	24	26	112	162
제조업	291	285	360	936
서비스업	4,064	2,196	2,666	8,926
합계	4,817	2,563	3,154	10,534

자료: 호주정부, AUSTRALIAN SMALL BUSINESS KEY STATISTICS AND ANALYSIS

- 호주는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소기업(Small Business Entities)기준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와 GST(Goods and Services Tax), FBT(Fringe Benefit Tax)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⁵³⁾
- 조세지원 중 일부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세제혜택의 경우 기업규모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가) Capital Gains Tax(CGT) 감면

- 소기업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Capital Gains Tax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각되는 자산이 12개월 이상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함

53)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SECT 328.110

나) Capital Gains Tax(CGT) 과세이연

- 소기업의 경우 사용하던 자산을 대체하고자 신규자산을 구입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위한 기존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CGT는 그 전부 및 일부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백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은 처분 전 1사업연도와 이후 2사업연도 중 취득할 수 있음

2)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가) 선급비용의 조기 비용화 허용

- 소기업의 경우 선급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선급비용을 기간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비용화할 수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나) 중소기업 및 벤처자본에 대한 저율 과세

-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규자본 투자를 주로 하는 통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율(30%)보다 낮은 15%를 적용하여 과세함
 - PDF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경우는 25% 또는 30%로 과세함
 - 호주 정부는 자격을 갖춘 호주 중소기업들에 대한 장기투자 주식자본(벤처자본 포함) 공급 시장의 발전과 그 성장 잠재력의 가시화, 그리고 ‘통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대한 투자 진작을 목적으로 조세 특혜를 부여하는 통합개발기금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⁵⁴⁾

54)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DB

다) 통합개발기금(PDF)에 대한 투자관련 조세혜택

- 통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대한 개인 투자자는 그들의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라) 소기업의 세액감면(25% entrepreneurs' tax offset)⁵⁵⁾

- 연간 매출액이 5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income tax)의 25%를 공제(offset)해 주고 있음
- 이 경우도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인의 경우 미혼(singles)의 경우 7만호주달러, 가족의 경우 12만호주달러 부터 공제율이 감소함

마) 소규모 신용조합의 이자소득 비과세⁵⁶⁾

- 연간 과세소득이 5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규모 신용조합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자소득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하고 있음

바)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이자 공제⁵⁷⁾

- 만기나 상환요청이 없는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call loan)은 부채보다는 자본의 성격이 높으나, 소기업의 경우는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55)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56)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57)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사) 소규모 광산업자에 대한 자원세 면제⁵⁸⁾

- 2012년 7월 1일부터 이익(profit)이 7,500만호주달러 이하인 광산업(smaller miners)은 자원세를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나 1억 2,500만호주달러까지는 자원세율을 일부 감면해주고 있음

3)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가) 재고물품의 실사 및 기말 평가 생략가능

- 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초와 연도 말의 재고물품의 차이가 5,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재고실사 및 기말 재고 평가를 생략 가능함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나) 현금주의에 따른 Goods and Services Tax(GST) 허용

- 소기업의 경우 GST 산정 시 현금주의 적용이 가능한데, 현금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동시에 현금주의를 적용하여야 함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다) Goods and Services Tax(GST)의 분기별 납부 허용

- 원칙적으로 GST는 매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소기업의 경우 GST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하며, 분기별 납부를 선택한 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말에 신고를 통해 분기별 납부분을 정산하여야 함

58)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라) GST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정산

- 소기업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분(매입분 중 사적 사용분)을 우선 전액 공제한 후 사업 연도 말에 이에 대해 정산할 수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마) 소기업 간편 상각법 허용

- 소기업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상각대상 자산 집단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음
 - 내용연수가 25년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는 연간 30%의 감가상각률을 해당 자산 집단에 적용하고, 내용연수가 25년 이상의 자산의 경우 연간 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함
 -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15% 또는 2.5%의 상각률을 적용함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와 판정기준

1)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가) 소액 자산에 대한 즉시 비용화

- 소기업이 6,500호주달러(2012-13 사업연도 이전에는 1,000호주달러) 미만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신 즉시 비용화가 가능함
 - 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호주달러 미만 감가상각자산만 즉시 비용화가 가능함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 총수익은 관계기업(Affiliates or Connected with you)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호주 국세청은 이와 같이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규정이 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택을 위해 대기업의 분할을 막는 방안이라 소개하고 있음

나) 신규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

- 소기업이 2008, 2009 사업연도 중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2010년 말까지 사용을 시작했다면 자산가액의 50%를 추가로 공제해줌
 - 공제대상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한하며, 반드시 호주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시점에 따라서 10% 내지 30%를 공제해 주고 있음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

2)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 소기업의 경우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의 4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급이 가능한 공제제도로서 결손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함
 - 총수익(An aggregated turnover)이 2,0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됨⁵⁹⁾

라. 조세지원제도별 조세지출

- 호주의 조세지출보고서(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상 2011-12년 총 조세지출 추정액은 1,113억 3천만호주달러임
 -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의 1%에 미달함

- 소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공제제도의 조세지출액은 6억 8천만호주달러로 중소기업 관

59) <https://expertsystems.ato.gov.au>

련 조세지출액 중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소기업 사용자 자산 양도 시 세액감면, 소기업 사용자 자산 양도 후 신규 자산 취득 시 과세이연 등의 순서로 조세지출액이 크지만 소기업 신규투자자에 대한 공제제도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준임

- 호주의 경우 소액 자산에 대한 즉시 비용화와 신규투자자에 대한 공제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지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지원만 확인할 수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보여주지 않음
 - 소규모기업의 선급비용 조기 비용화 허용, 소기업의 재고실사 및 기말평가 생략 허용, 관계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비용의 공제, 소규모 광산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조세지출보고서상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제시됨⁶⁰⁾

〈표 Ⅲ-18〉 2011-12년 호주의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조세지출액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조세지출액	
		금액	비중
중소기업에 한정된 조세지원	소규모 사업소득(법인, 개인)의 세액감면	190	0.17
	통합투자기금에 대한 저율과세	45	0.04
	소규모 신용 조합원 대출이자소득 비과세	-	-
	소기업 신규투자자에 대한 공제제도	680	0.61
	소기업 사용자 자산 양도시 세액의 50% 감면	340	0.31
	소기업 자산 양도후 신규자산 취득시 과세이연	160	0.14
	부가가치세 간소한 방법 적용	10	0.01
	소기업의 간편 상각방법 적용허용	15	0.01
	소계	1,440	1.29
총조세지출액(추정)		111,334	100

주: 1. 소규모 신용조합원 대출이자 소득 비과세: 조세지출액이 0원은 아니고, 1백만호주달러 미만 금액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60) 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과 소액자산 즉시 비용화 허용의 경우 조세지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

IV.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0년 현재 전체 사업체 수 3,125,457개 중 3,122,332개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의 경우는 전체 종업원 수 1,400만명 중 1,200만명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7년 총 2,700만개의 기업 중 종업원이 500인 미만의 경우는 99.9%이며, 500인 미만의 기업의 매출액은 전체기업 매출액의 40.2% 비중임
 - 일본의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법인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3%임
 - 영국은 2011년 현재 전체 기업수 1,655,070개 중 중소기업이 1,648,938개로 99.6%의 비중을 차지함
 - 프랑스는 2011년 현재 전체 기업수 2,381,963개 중 중소기업이 2,377,298개로 99.8%의 비중을 차지함
 - 호주는 2011년 현재 전체 기업수 2,085,321개 중 소기업이 1,998,763개로 95.8%의 비중을 차지함

1. 기업규모 판정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른 과세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준법」을 기초로 조세지원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범위를 조정함
 - 미국의 경우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지원과 관련된 소기업 기준은 개별 조세지원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도 기업 규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회사법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본공제제도만이 이를 준용하며 세법에서는 별도의 기업규모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세법에서는 EU 위원회의 정의를 준용하기도 함
 -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정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범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세법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범위규정을 준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범위를 조정함
 - 호주의 경우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서 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특법」상에서는 업종을 열거함
- 미국, 일본의 경우 조세지원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영국, 프랑스, 호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업원은 50~300명, 매출액 0~300억원, 자본금 0~80억원의 구간에 있음
- 미국의 경우 조세지원별로 총수익기준, 종업원기준, 총자산기준, 매출액 구성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자본금 1억엔 이하가 대표적인 규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규모기준은 EU 집행위원회의 정의 규정을 따르므로 종업원 250명, 매출액 5,000만유로, 자산가액 4,300만유로 이하임
 - 하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규모기준은 각각의 제도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영국의 회사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종업원 250명, 매출액 2,280만파운드, 자산가액 1,140만파운드 이하임
 - 호주는 매출액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하는데, 개별 세법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독립성기준을 적용하는 조세지원제도는 발견되지 않음
 -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이 있으나 독립성기준이 조세지원별로 상이함
 - 경감세율의 적용 시에는 법인의 지분 100%를 자본금이 5억엔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별조치법상 대부분의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비중소기업이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비중소기업들(2개 이상)이 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영국의 경우 독립성기준이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특정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법인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제외하면 별도의 독립성기준을 적용하는 조세지원제도는 발견되지 않음
 - 프랑스의 경우 독립성기준이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성장 중소기업(growing SME)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임
 - 호주의 경우 매출액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업을 합산하도록 하는 독립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더라도 바로 대기업이 되지 않고 중견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호주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업에 해당됨

-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불충족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함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는 중소기업의 요건이 불충족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제도가 발견되지 않음

〈표 IV-1〉 국가별 세법상 기업규모 판정기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¹⁾	프랑스	호주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법, 연방 내국세법(IRC)	중소기업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	회사법(company act), EU위원회 정의, 개별세법	EU위원회 정의, 일반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업종기준	있음	있음 ⁸⁾	있음 ⁹⁾	없음 ²⁾	없음	없음
중기업	업종에 따라 종업원 50~300명, 매출액 0~300억원, 자본금 0~80억원 ³⁾	제도 없음	자본금 1억원 이하 종업원 1천명 이하	종업원 250명, 매출액 5,000만유로, 자산가액 4,300만유로 ⁴⁾	종업원 250명, 매출액 5,000만유로, 자산가액 4,300만유로 ⁴⁾	제도 없음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종업원 10~50명, 매출액 0~300억원, 자본금 0~80억원 ³⁾	개별 세계 혜택별로 상이한 총수익기준, 총자산기준, 종업원 기준을 사용함	중소기업 중 자본금 3천만엔 이하 ¹⁰⁾	종업원 50명, 매출액이나 자산가액 1천만유로 이하 ⁴⁾	종업원 50명, 매출액이나 자산가액 1천만유로 이하 ⁴⁾	매출액 200만달러,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2,000만달러 기준이고 개별 세계 혜택별로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음
독립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5,000억 법인주주의 지분율이 30% 초과법인,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종속회사 합산한 규모 기준을 넘어서는 안됨 ³⁾	제도 없음	세계혜택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 ¹¹⁾	법인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⁵⁾	최대주주인 개인의 지분율이 25~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⁶⁾	매출액 산정 시 관계기업은 합산하여야 함

〈표 IV-1〉의 계속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¹⁾	프랑스	호주
기타기준	사회적기업의 경우 종업원 0~300명, 매출액 0~300억원 등 별도기준	수익구성, 자산사용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지배기준 ⁷⁾	제도 없음
중견기업 분류	중견기업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출업기준· 유예제도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불충족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주: 1) 조세지원별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2) 대체로 없으나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음
 3) 중소기업기본법상 분류기준
 4) EU 집행위원회의 정의를 준용하며, 개별 조세지원제도 별로 일부 범위를 조정하기도 함
 5)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별도의 독립성기준을 적용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없음
 6) '성장 중소기업(growing SME)'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25%, '신설 혁신기업(innovative new enterprises)'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50%,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적용'은 75% 지분기준으로 다른 차별과제에는 지분기준이 발견되지 않음
 7) 사업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요건임
 8) 소규모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이 있음
 9) '중소기업 기업상속 세제혜택'에서 유흥업종은 제외하고 있음
 10)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상 소기업 기준임
 11)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이 상이함

2. 조세지원제도 비교

가. 투자·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소액자산 특례상각, 유무형자산 특례상각 및 세액공제, 임대자산 세액공제, 에너지 환경 설비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영국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는 없음
 - 투자지원을 위하여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기계장치와 시설에 대한 연간 투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2008년 4월 1일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공제법상 초년도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에 관한 조세지원제도는 발견되지 않음
 - 호주는 사업용 자산의 Capital Gains Tax 감면 및 과세이연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발견되지 않았음
 -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액공제와 특정 중소기업의 자본이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표 IV-2〉 투자·구조조정 관련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투자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출 인상 취득세 증가제외</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2012년에 폐지된 일코을 연료 및 방이오 디젤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특별 상가 및 세액공제 중 택일 (소기업): 취득가액의 30%만큼 감가상각한 도액 증액/취득가액의 7%세액공제, 1년 이월 가능 중소기업 임대자산 세액공제: 기계장치 등의 임대비용의 60%의 7% 세액공제, 1년 이월가능</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소액자산특례상가: 취득가액 30만엔 미만 유·무형자산 취득가액 비용화 허용(일반법인 10만엔 미만 자산)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부하저감 추진설비 특별 상가 및 세액공제</p>	<p>차별과세제도 없음 (2008년에 중소기업 초년도공제 폐지)</p>	<p>대·중소기업간 무차별</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Capital Gains Tax (CGT) 감면: 사업에 12개월 이상 사용한 자산매각시 CGT 50% 감면 Capital Gains Tax (CGT) 과세이연: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대체하고자 신규자산을 구입하고 기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함</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소액자산특례상가: 취득가액 6,500달러 미만의 자산의 경우 즉시 비용화 가능함 신규투자자에 대한 공제 제도: 중소기업이 사업용 신규자산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동을 시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50%를 공</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구조조정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중 택일(소기업): 취득가액의 30%만큼 감가상각한도액 증액/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1년 이월 가능</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의 사업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액공제: 적격 중소기업의 사업양수를 위하여 부담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예 특정 중소기업의 자본이득세 감면: 사업장을 3십만 유로 이하로 양도할 경우 자본이득을 면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예</p>	<p>제할 수 있음</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나. 연구·개발·고용 관련 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지원으로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없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비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소 2%에서 최대 4%의 공제율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에는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0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 대기업은 130%임
 - 프랑스의 경우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지원은 세액공제액을 조기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와 신설 혁신기업에 대한 2년간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에 대하여 5%의 환급률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소기업의 종업원 건강보험, 퇴직연금, 장애인 시설설비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세액공제의 요건 및 한도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고용증진을 증진시킨 중소기업은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수출업무직원 채용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IV-3〉 연구·개발·고용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연구 개발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특례</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의 12%를 한도로 세액공제함(중소기업의 경우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함)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대상 연구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를 감면.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이월 R&D 세액공제액 조 기 환급제도: 세액공제에 중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음.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 신설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를 감면.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의 200%를 소득에서 공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130% 공제</p>	<p>[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의 45%를 세액에서 공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40% 공제</p>
고용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소기업 종업원 건강보험 세액공제: 종업원의 임부를 중 근로자 부담분의 일부를 세액 공제함</p> <p>소기업 퇴직연금 초기비용 세액공제: 초기 도입시 비용의 50%를 연 500불 한도로 세액공제함</p> <p>소기업 장애인시설 비용 세액공제: 연 250불 초과비용의 50%를 1만250불 한도로 세액 공제함</p>	<p>[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세액공제: 전기말에 비해 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하고, 절대 인원으로 2인 이상인 경우 증가자수에 20만엔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의 20%를 한도로 세액 공제함(비중소기업은 증가자수가 10%이며, 한도가 법인세의 10%임)</p>	<p>제도 없음</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직전 2년간 실제 납부세액의 평균을 초과한 산출세액에 급여증가율(15%를 한도로 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 수출업무직원 채용비용 세액공제: 직원의 채용(hiring)과 관련한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상생 협력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급산입의 특례등</p>	<p>제도 없음</p>	<p>제도 없음</p>	<p>제도 없음</p>	<p>제도 없음</p>	<p>제도 없음</p>

다. 기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 인하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미국의 경우 IRC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누진세의 과세단계가 더 다양한 편임
 -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함
 - 영국은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함
 - 프랑스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 15%를 적용함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34.43%(36.10%)의 세율을 적용함
 - 호주의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규모별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

- 한편, 위와 같이 조사대상 주요국의 경우 호주를 제외하고는 소득수준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율 구조를 가진 국가는 OECD 회원국 34개 중 12개국 정도로 다음 <표 IV-4>를 참조할 것⁶¹⁾
 - OECD 자료는 미국과 같이 중소 및 비중소기업이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합친 것임
 - 호주의 경우 OECD 자료상 일반 법인세율은 30%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29%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나, 호주 국세청 및 관련 세법을 살펴보면 단일세율(30%)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 벨기에의 경우 소득금액 25,000유로까지는 24.9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90,000유로까지는 31.93%의 세율을 적용함
 - 헝가리는 과세소득 HUF 500 million까지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61) OECD 사이트(<http://www.oecd.org/tax/tax-policy/oecd-tax-database.htm>)에서는 회원국 34개국 중 12개 국가가 기업규모별로 법인세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IBFD(www.ibfd.org)에서는 OECD 회원국 34개 중 10개 국가가 기업규모별로 법인세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OECD를 기준으로 작성함

- 일본의 경우 OECD 통계상 소규모 법인 적용세율이 18%인 것으로 나타나나, 일본 국세청 및 관련 세법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연소득 중 800만엔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는 19%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됨⁶²⁾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이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금액 2억원 초과금액부터 200억원 이하 금액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OECD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음
- 네덜란드는 과세소득 20만유로까지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표 IV-4〉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법인세율 현황

(단위: %)

국가	일반 법인세율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호주	30.0	29.0
오스트리아	25.0	n,a
벨기에	33.99	24.98
캐나다	15.0	11.0
칠레	20.0	n,a
체코	19.0	n,a
덴마크	25.0	n,a
에스토니아	21.0	n,a
핀란드	24.5	n,a
프랑스	34.4	15.0
독일	15.825	n,a
그리스	20.0	n,a
헝가리	19.0	10.0
아이슬란드	20.0	n,a
아일랜드	12.5	n,a
이스라엘	25.0	n,a
이탈리아	27.5	n,a
일본	30.0	18.0
한국	22.0	10.0
룩셈부르크	22.05	20.8

62) 〈표 IV-4〉에서는 OECD 통계를 사용함

〈표 IV-4〉의 계속

국가	일반 법인세율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멕시코	30.0	n,a
네덜란드	25.0	20.0
뉴질랜드	28.0	n,a
노르웨이	28.0	n,a
폴란드	19.0	n,a
포르투갈	25.0	n,a
슬로바키아	19.0	n,a
슬로베니아	20.0	n,a
스페인	30.0	25.0
스웨덴	26.3	n,a
스위스	8.5	n,a
터키	20.0	n,a
영국	24.0	20.0
미국	35.0	15.0

자료: <http://www.oecd.org/tax/tax-policy/oecdtaxdatabase.htm>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함
 - 미국의 경우 사업개시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 수익금액 이하인 법인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 일본과 영국 및 호주는 최저한세제도가 없음
 - 프랑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한세(IFA)를 인하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접대비 등에 대한 손금 한도를 증액하고 업무무관경비에 관한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부담을 완화시킴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접대비만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대손충당금 또한 중소기업 및 은행 등 법에서 열거한 법인만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상속공제

에서도 혜택이 주어짐

- 미국의 경우 소규모 생명보험사와 화재보험사에 대하여 세금감면, 면제, 보험료 수익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납세를 유예해주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코르시카 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소기업출자금에 대한 부유세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이 비중소기업에 비해 길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만이 결손금 소급공제(1년)가 가능하고, 이월공제 시 공제한도가 없음
- 영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손금소급공제가 허용되며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프랑스의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손금소급공제가 허용되며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호주의 경우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기업 규모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자 등에게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소기업 주식의 장기보유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거나, 소기업 주식 매각 후 신규 소기업 주식 취득 시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며, 개인투자자가 소기업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 통상소득으로 보아 공제해주는 혜택 등이 주어짐
- 일본은 개인이 중소 및 벤처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개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특정 소기업 주식취득 소득공제, 특정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서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이사보유 자사주의 자본이득 면제제도, 적격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주식 인수금액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함
- 호주의 경우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통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대한 저율과세 및 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표 IV-5〉 세율 등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세율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제도] 과세소득별 누진세율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인하</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제도] 과세소득별 누진세율: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임종율을 제외하고는 과세소득의 크기에 따라 15~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의 경감 세율 적용: 중소기업은 연소득 800만엔까지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비중소기업은 25.5%의 단일세율)</p>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소액 과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과세소득이 30만 파운드에 미달할 경우 경감세율(20%)이 적용. 일반 세율은 24%</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저세율 적용: 과세소득이 36,120 유로 이하인 경우 자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함. 비중소기업의 경우 33.3%</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 (다만,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는 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저율과세)</p>
최저 한세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제도] 최저한세율의 경감</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수익금액별 최저한세 적용 면제: 실질 최저한세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이 최저한세 미적용. 설립 두 번째 과세연도부터 각 연도별 로 수익금액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은 법인은 최저한세 미적용</p>	<p>제도 없음</p>	<p>제도 없음</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제도 없음</p>
순금 인정 소득 공제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제도] 집대비 한도 증액 업무무관경비 범위 축소</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집대비 한도 내 순금산입 허용: 중소기업 절대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 순금산입가능(비중소기업은 순금불산입항목) 대손충당금 한도내 순금산입허용: 중소기업 대손충당금은 한도내에서 손</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p>대·중소기업 간 무차별</p>

〈표 IV-5〉의 계속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소규모 생명보험사 세계 해택: 총 자산 5억불 미만 인 경우 소규모 생명보험사의 소득공제의 60%를 공제함 소규모 화재보험사 세계 해택: 연 총수익 60만불 미만이고 보험료 수익비율이 50% 미만인 소규모 화재보험사의 세금이 면제됨 소규모 화재보험사 세계 해택: 보험료 수익이 120만불을 넘지 못하는 소규모 화재보험사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금산입이 허용되나, 은행 등 법에서 열거한 법인이 아닌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은 전액 손금부인 됨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 기업상속관련 세제해택: 사업승계에 관련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경영자인 혈족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영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납세 유예함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사업용자산 자본이득의 법인세 면제: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법인이체가 면제됨.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 코르시카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코르시카(Corsica)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선급비용의 조기비용 허용: 중소기업의 경우 선급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기간을 걸쳐서 제공받는 경우에도 기간간 비용을 인분하지 않고 사업연도에 전부 비용화 할 수 있음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규자본 투자를 주로 하는 통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율(30%)보다 낮은 15%를 적용하여 과세함
	결손금 결손금 소급 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 결손금의 소급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및 이월공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액이 77,000파운드에 미달하는 하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외국지점과 외국자회사 결손금공제: 적격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간 무차별

〈표 IV-5〉의 계속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p>공제혜택: 영업손실의 소 금공제 연도는 통상적으로 2년이나 2008년과 2009년 발생한 영업손실은 최장 5년까지 소금공제가능함 (비중소기업은 2008년과 2009년 택일해야함)</p>	<p>결손금은 1년간 소금공 제가능하고, 이월공제(9 년)시 공제금액의 한도가 없음(비중소기업은 소금 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 공제 시 과세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 중소기업의 동족회사 유 보금 제도 미적용: 비중 소기업의 경우 특정인이 나 가족구성원들이 법인 세율보다 높은 소득세율 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 고자 동족회사에 해당하 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유 보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를 추가 과세하나 중소기 업은 적용하지 아니함</p>		<p>EU 회원국이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국에 설립 된 지점이나 자회사의 손 실을 공제받을 수 있음</p>	
기타	<p>[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 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제도] 연구보조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가산세 한도 인하 등</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 세제도] 장기보유 중소기업 주식 양 도차익의 소득공제: 소기 업 주식 5년 초과보유 후 양도하는 투자자 (Noncorporate taxpayer) 의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 세이연: 6개월 이상 보유</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 세제도] 개인의 중소 및 벤처투자 세제혜택: 개인이 설립 3 년 미만의 특정 중소 벤 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총 소득금액의 40%와 1,000 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한 도로 투자액을 개인의 총 소득에서 공제하고, 설립 10년 미만의 경우에는</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특정 중소기업 투자자가 비 득공제(EIS): 투자자가 비 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 우 주식의 취득가액에 30%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에서 공제 특정 스톡옵션에 대한 조 세지원제도(ESM): 적격 중 소기업의 종업원이 스톡옵</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이사 보유 자사주의 자본 이득 면제: 중소기업의 이 사가 퇴직 시까지 보유한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 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소득세를 면제 적격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EEA 역내 에 설립하는 적격 중소기업</p>	<p>[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 제도] 통합투자자금(pooled investment funds)에 투자 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 본이득세가 면제됨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신용조합의 조합원 대출에 따른 이자소득의 비과세</p>

〈표 IV-5〉의 계속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p>한 소기업의 주식 매각 후 신규 소기업 주식 취득시 신규 주식취득가액 범위 안에서 과세이연함 (Noncor porate taxpayer 에 한함)</p> <p>개인투자자가 소기업 투자 후 손실을 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통상소득에서 공제 허용함</p> <p>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가 발행한 주식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통상소득에서 공제허용함</p> <p>소기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채무증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통상소득에서 공제 허용함</p> <p>개인 및 C corporation 이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60일 이내에 전문소기업투자회사에 주식 취득시 주식 매각이익은 과세이연함</p>	<p>투자액 전액을 한도 없이 동일 연도의 다른 주식 양도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p>	<p>선을 부여받을 경우 그 선을 특유선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를 면제</p>	<p>기업에 출자하여 보유하는 납세자는 투자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p> <p>중소기업 주식 인수금액 세액공제: 자격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p> <p>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부유세 세액공제: 적격 소기업에 대한 출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유세 산출세액에서 공제</p>	<p>관계회사로부터 차입시 이 자비용공제허용 소규모 광산업자에 대한 자원세 면제</p>	

라.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기준 적용과 같이 기장의무를 완화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주의 수가 한정적일 경우 법인단계과세를 하지 않는 S법인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장의무에 대한 간소화를 위하여 현금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이전가격제도 적용배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적용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
 -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장의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함
 - 호주의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연도 초와 연도 말의 재고물품 차이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재고실사 및 기말 재고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도 개별 자산별로 상각하지 않고 Pooling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분납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를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분기별 납부를 허용해주고 있고,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은 우선 공제한 후 사업연도 말 시점에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표 IV-6〉 납세협력부담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건설용역 인도기준 적용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	한국 건설용역 인도기준 적용 합병 시 구분경리 완화	미국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소기업의 현금주의 회처리 허용: 직전 3개연도 평균수익이 500만불을 넘지 않는 경우 현금주의 회계처리 허용함(C corporation은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원칙)	일본 제도 없음 (개인사업자에는 있음)	영국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현금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공급액이 1.35백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 대상.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공급액이 1.35백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 대상.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	프랑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 추계계산: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액의 71%(또는 51%)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추계할 수 있음.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배제	호주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재고실사 및 기말제고 평가의 생략: 소기업은 사업 연도 초와 연도 말의 재고물품 차이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재고실사 및 기말제고 평가를 생략 감가상각 pooling제도 허용: 소기업은 개별자산별로 상각하지 않고 Pooling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기장의무	기장의무	미국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대·중·소 차별 없음	일본 대·중·소 차별 없음	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이진가격제도 적용배제. 비중소기업의 경우 적용	프랑스 차별과세제도 없음	호주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현금주의 허용 부가가치세 분기별 납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사업연도말 일괄 정산 허용
신고·납부의무	신고·납부의무	미국 대·중·소 차별 없음	일본 대·중·소 차별 없음	영국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연장: 소기업은 연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	프랑스 차별과세제도 없음	호주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현금주의 허용 부가가치세 분기별 납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사업연도말 일괄 정산 허용

마. 조세회피 방지제도

- 영국의 경우 소기업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지역 이외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중기업과는 달리 과세소득에 포함함

〈표 IV-7〉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차별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감면 배제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제도 없음	수입배당금에 대한 소득면제 제한: 소기업이 수취하는 배당금은 영국 국내 또는 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지역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지급된 것만 소득에서 제외됨	차별과세제 도 없음	차별과세제도 없음

바.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우리나라는 최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가업상속의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는 중견기업관련 세제지원 혜택이 발견되지 않았음

사. 조세지출 규모 간의 비교

-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과세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2010년 7.41%, 2011년 8.21%를 차지하고 있음
- 차별적 과세제도를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조세지원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공제율 등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으로 구분하면 2011년 전체 조세지

출 대비 각각 5.09%와 3.12%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조세지출 대비 3.7%의 수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3% 수준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1.4% 수준임

□ 비교 대상 주요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약 1%, 프랑스 약 4.8%, 호주 약 1%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주요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중 중소기업 조세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6% 수준임

- 그런데 우리나라와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조세지출예산서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중소기업 해당분에 대한 금액을 구분할 수 없었고,⁶³⁾ 또한 비교대상 주요국들의 경우 조세지출 예산서상 나타나지 않는 조세지원제도들도 존재하였음⁶⁴⁾

- 그러므로 조세지출규모의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임

□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조세지원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총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5.09%, 미국 약 1%, 프랑스 약 4.8%, 호주 약 1%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주요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중 약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세지출예산서 간 국제비교 시 국가별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고취시키

63)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3%)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인데, 조세지출예산서 혹은 국제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호주의 경우 R&D 세제지원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중소기업이 누리는 R&D 세액공제 금액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

64) 또한 우리나라 및 영국의 조세지출예산서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동 혜택을 적용 받는 중소기업들이 만약 비중소기업이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 보고서를 이해하여야 함

기 위한 제도들이 많은데, 이러한 제도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한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국제 간 비교 시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조세지출예산서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영국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도 나타나고 있으나,⁶⁵⁾ 총조세지출액은 확인할 수가 없고 주요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관련된 조세지출을 제외하면 많은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음

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비교

-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보다는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지원이 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측면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이 총조세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9%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비중 3.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이 주된 조세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4%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비중 0.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자는 중소기업

65)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 중 중소기업의 이전가격제도 적용배제나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혜택은 조세지출예산서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에 한정적인 제도인 데 반해 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임

- 미국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세액감면은 보험업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R&D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R&D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R&D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차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비중은 주된 조세지출액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R&D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공제율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
- 호주의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R&D와 관련된 세제지원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V. 시사점

1. 개요

- 우리나라는 기업규모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위해 기업규모의 분류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였고,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세법상 추가적인 요건을 마련해 두었음
 -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 관한 통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됨
-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짐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지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2. 주요국의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별과세제도의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
 -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나,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의 종류 및 그 공제율 등에 있어서 비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편임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비교대상 주요국 중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용 자산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일본 정도로 파악되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해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특별상각·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별적 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⁶⁶⁾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특별상각 형태의 조세지원제도가 최근에 폐지된 바 있음
 - 영국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소기업만이 적용할 수 있는 초년도공제가 비중소기업도 적용 가능한 연간투자공제로 대체됨
 -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중소기업 조세지원이 폐지

3. 법인세율 구조의 비교

-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소득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2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함
 - 반면 호주를 제외한 조사대상 주요국의 법인세율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앞서 제Ⅵ장 국제비교에서 밝힌 것과 같이 OECD 회원국 34개 중 12개 국가 정도가 누진세율 구조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66) 감가상각 한도를 크게 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가속 상각제도일 뿐 실제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취득원가를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고, 여기에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부여하는 주요국은 없음

22개 국가는 단일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4. 조세지출규모의 비교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총 조세지출 대비 3.7%의 수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3.1% 수준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총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1.4% 수준임
 -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 가능한 주요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약 1%, 프랑스 약 5%, 호주 1% 정도의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주요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중 중소기업 조세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수준임
 - 한편 국제간 조세지출 규모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혜택이 총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5.09%, 미국 약 1%, 프랑스 약 4.8%, 호주 약 1%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주요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중 약 7.6%에 해당함
 - 다만, 각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하므로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2013
- , 『2011년 국세통계연보』, 2012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 ,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 European Commission, *The new SME definition*, ENTERPRISE AND INDUSTRY PUBLICATIONS, 2005
-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 OECD,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3: An OECD Scoreboard*, 2012
- OECD, *REDUCING THE TAX COMPLIANCE BURDEN*, 2012
- THE WHITE HOUSE, *Analytical Perspectives*, 2013
- CRS Report for Congress, *Small Business Tax Benefits: Overview and Economic Rationale*, 2009
- CCH, *U.S. MASTER TAX GUIDE*, 2012
-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10, 11
-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basics for small business*,

2011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2

www.samili.com

www.ibfd.org

www.hmrc.gov.uk

www.impots.gouv.fr

www.irs.gov

<http://uscode.house.gov/>

www.nta.go.jp

<http://law.e-gov.go.jp/>

www.ato.gov.au

www.austlii.edu.au

www.oecd.org

세법연구 12-09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 사례 조사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김학수 · 김태훈 · 최정욱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4-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